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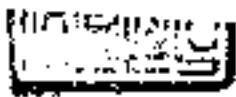
설 시 협 약(변경)

협 약 일 자 : 2001. 12. 26.

변경협약(1차)일자 : 2005. 03. 08.

변경협약(2차)일자 : 2011. 07. 01.

인천광역시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성격)	1
제 3 조 (해석)	6
제 4 조 (본회의 우선순위)	6

### 제 2 장 기본 약정

제 5 조 (사업자협회의 지정)	7
제 6 조 (사업자협회의 사격 및 권리)	7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원칙)	7
제 8 조 (인천광역 [임시회장])	8
제 9 조 (사업이행부)	8
제 10 조 (총재자 또는 총재지분의 변경)	9
제 11 조 (소유권의 계속 및 관리운영권의 풍류)	9
제 12 조 (방법의 변경)	9
제 13 조 (합의의 효력 및 등)	10
제 14 조 (연세비자율)	10

###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설계계획의 승인)	10
제 16 조 (종사기비)	11
제 17 조 (총사업비 변경)	11
제 18 조 (본 사업시설 및 본 사업부지에 대한 채다소 징용권)	12
제 19 조 (부록)	12

제 20 조 (유물)	13
제 21 조 (보상입수 및 처리비용)	14
제 22 조 (공사비의 산정)	14
제 23 조 (공사기준)	14
제 24 조 (공사의 작성)	15
제 25 조 (공집관리)	15
제 26 조 (지적상권)	16
제 27 조 (공사도급)	16
제 28 조 (관리자의 선임 및 감독)	17
제 29 조 (관리자의 의무 및 권한)	17
제 30 조 (임원 회의)	17
제 31 조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18
제 32 조 (환경감사)	18
제 33 조 (준공전 사용)	19

####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운영 및 유지보수)	19
제 35 조 (보증 및 벌금(수령 및 제작))	20
제 36 조 (교수방 사용제한)	21
제 37 조 (운영비용)	21
제 38 조 (기타 경기한 수익성사업)	21

#### 제 5 장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 39 조 (무상사용기간)	21
제 40 조 (주정화수량)	32
제 41 조 (사업수익률)	22
제 42 조 (사용료)	22
제 43 조 (사용료의 정산 및 징수)	23
제 44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23

## 제 6 장 인천광역시의 자원

제 45 조 (인천광역시의 자원)	24
제 46 조 (사용료수입 보장)	24
제 47 조 (행정자원 및 기관 기원)	25
제 48 조 (전용 및 보증)	26
제 4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26
제 50 조 (인천광역시의 거제사유)	27
제 51 조 (법적영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 불가항력)	28

## 제 7 장 불가항력

제 52 조 (불가항력 사유의 동시 및 대체 협의)	29
제 53 조 (승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30

## 제 8 장 협약의 종료

제 54 조 (기기만으로 인한 협약의 종료)	30
제 55 조 (협약의 종료제기로 인한 종료)	31
제 56 조 (해지사지금)	32
제 57 조 (해지사지금과 소정 과정)	33
제 58 조 (협약종료시의 초기)	34
제 59 조 (연락종료에 따른 일반규정)	35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연경후천)	36

## 제 9 장 분쟁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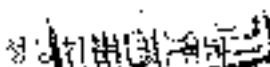
제 61 조 (분쟁의 조율)	36
-----------------	----

제 62 조 (분수금액)	36
제 63 조 (전문가에 의한 결정 및 종재)	37

## 제 10 장 기타 사항

제 64 조 (여주들의 권리)	38
제 65 조 (민족 외부)	38
제 66 조 (경과속해 등)	39
제 67 조 (재부보관서)	39
제 68 조 (기록유지)	39
제 69 조 (감사)	39
제 70 조 (역학의 수익가)	39
제 71 조 (인건강역서의 혈약준수원칙)	39
제 72 조 (인부구호)	40
제 73 조 (보시적 조건의 배제)	40
제 74 조 (비밀유지)	40
제 75 조 (양도)	41
제 76 조 (시면통지)	41
제 77 조 (혈액의 변경)	42
제 78 조 (민어)	42
제 79 조 (증거법)	42

## 별첨 목록

- 별첨 1 본 사업시설  
제1부 : 본 사업의 범위  
제2부 : 종도시설  
제3부 : 단수시설
- 별첨 2 시위 이행계획
- 별첨 3 종사업비 및 운영비  
제1부 : 토약  
제2부 : 종사업비(설정)  
제3부 : 종면 관주자비(경상)  
제4부 : 출공사업비(설정)  
제5부 : 운영관리비  
    1) 운역관리비 토약  
    2) 운영관리비 대역
- 별첨 4 운영성장   
제1부 : 종도시설  
제2부 : 단수시설
- 별첨 5 해지시 지급금 계산  
제1부 : 선정가치의 정의 및 산식  
제2부 : 미래현금흐름과 순위제가치의 정의 및 산식
- 별첨 6 운송확인관승
- 별첨 7 투약기
- 별첨 8 기준사용료
- 별첨 9 사용료 조정
- 별첨 10 사업간접지분시설 출공보조서

- 별첨 11 고학
- 별첨 12 해부 쪽지 및 새쓰포털 (CD Rom 첨부)
- 별첨 13 홍부 도면  
제1부 : 송도사설 평년도 및 운영경제  
제2부 : 단수사설 평년도 및 운영경제
- 별첨 14 자본적 재기출비에 따른 대수문재학사 (CD Rom 첨부)



##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인천광역시와  
심성버울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본점 전 상호: 삼성비단디인천환경 조식회사), 이하  
“사업시행사”는 본 사업이 사회안전기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 의이고 효율적인 사회안전기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민간투자법(아래 정의됨)과 따라 시행되는 시책임을  
인식하고, 그 기본 원칙에 의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은 위하여 2001년 12월 26일  
체결하였고 당초 실시협약 제77조에 따라, 등록증은 본 사업장이 변경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초 실시협약 일부 조건은 2006년 3월 8일(자연장하였고 다음과 같이  
2011년 7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아래 정의됨)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아래 정의됨)에 따라 본 사업장에 있어, 본 협약은 사업시행으로 설정하고 종  
사업에 관한 일체 양이적·사업사항 간에 활의통 기관은 구조합을 조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종류: 별첨 1(본 사업시설)과 같다.

#### 제 2 조 (정의)

본 협약을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涵義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의涵義는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관리자 : 관리를 관리하는 관리자(그 속개인과 관계인을 포함한)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본 협약 제28조의 본 사업시설 공사로 관리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통령령 법률 제5904호 건설기술관리법은 의미하며, 수정 조항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수장 또는 대장부 것을 포함한다.
4. 건설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시행 은행개시일(지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권리이자 :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동안 자금(차입금)에 따른 대주단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6. 유사기간 : 각 시설에 원하여, 단체 사업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부자별 및 민간부자별 시행령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확인증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유사비 : 별첨 2(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비를 말한다.
8. 공사착수일 : 설계체화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적중한 국시착수신고서와 표시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9.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민간부자별, 민간부자별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원천생산지로부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의미한다.
10. 국가세차별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별당사자로 하여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수장 제51조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11. 이용환경 :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설계체화 승인을 포함한 차입금 임대의 선행조건들이 또는 총수 또는 단체이자 차입금이 원불일치 있는 상대에 따른 것을 말한다.
12. 기준사용료 : 별첨 2(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기재되어 있는 2000년 1월 1일 분면가격의 사용료로서, 제42조(제42조)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된 사용료를 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13.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은) 또는 연기금(등)을 말한다.
14. 단수시설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한수에 진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와 연결되는 하수관련설비 별지 1(본 사업시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5. 무상사용기간 : 본 사업시행에 원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16. 높이변동비 : 2000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본 사업시설 준공시까지 물가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민간부자별 : 대한민국 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간부자별을 의미하며, 수장 제51조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18. 민간부자별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094호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간부자별 시행령을 의미하여, 수장 제51조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19. 민간투자사업기본체계 :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0-3호(2000. 3. 13.)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체계를 의미하며, 수장 또는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20. 협약 : 대한민국의 도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조례, 협약, 고시, 행정명령, 행정재량, 조례, 기타 협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또는 유관기관의 입법, 기도, 기사, 행정지침 등(수시로 변경 또는 수정되는 것을 포함함)을 말하며 민간프로젝트에 따라 만들어진 협약 체계를 포함한다.
21. 본 사업 : 별첨 1(본 사업시설)에 특성된 본 사업시설의 문제, 현상,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의미한다.
22. 본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목상시용기간(이종일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3. 본 사업부지 :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조지지를 의미한다.
24. 본 사업수입 :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인천광역시로부터 받는 사용료 수입을 의미한다.
25. 본 사업시설 : 송도시설 및 관수지설로 이루어진 본 사업의 대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의미한다.
26. 본 항목 : 본 출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장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27. 불가항력 : 어느 협약당사자의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사태(또는 양자의 결합) 중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도록 동세될 수 있는 것으로서, 명백히 유익한 것 또는 자유를 위한 당해 협약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실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51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 (※) 사업체화서 : 사업시행자가 2001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것으로서 별첨 1(본 사업시설)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체계서를 의미한다.
29. 사업년도 :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년도에는 운영이 개시된 해로부터 그 해까지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전도의 경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실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30. 사업수익률 :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자체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체계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률과 사용료결정을 위한 공식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의 투자수익률(RR)을 의미한다.
31.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시행령 및 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된 삼성제물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그 직접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상호는 출자자 위원회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33. 사업시행자 지정 : 본 협약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사용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지를 사용의 대가로 운영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에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대역은 별첨 8(기준사용료)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35. 사용안전보건법 : 대한민국 법률 제4250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며, 수정 또는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36.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원보에 표시되는 통해 기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기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하겠다.
37. 송도시설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송도에 건설하는 본주종합거리시설로서 별첨 1(본 사업시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8. 수질환경보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260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의미하며, 수정 또는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39. 시공자 : 전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권한을 받은 전설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9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미하며, 수정 또는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41.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일간부자업, 민간부자업 시행령, 민간부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의~~ ~~승인~~ 받은 본 사업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의미하며, 수정 또는 ~~제작~~ ~~제작~~ 받을 경우 포함한다.
42. 양체리사업 :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구의 이형 자체기 있을 경우 그 외부자에 대하여 브랜드, 자체상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용으로 한국증권업협회가 제시하는 신용등급 44위 3년 만기 부동산 회사가 유동수익률을 말한다.
43. 쇠보미 : 불가린동네를 의미한다.
44. 운영개시일 :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 제32조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종공확인증장을 교부하는 날 또는 본 협약 제33조에 의하여 운영개시일로 변경된 날을 말한다.
45. 위험물 :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형태로 물질하고, 단체으로 또는 나노 물질과 결합하여, 자본 또는 사람 기타 환경이 치해를 입는 유기체적 대하여 위험, 손해 또는 생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폭발물, 소음, 오염물질, 폐기물 기타 화성, 유해성, 가연성, 부식성을 가진 물질을 포함한다.
46. 우편기록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일부를 수령할에 있어 전·화기 등 제3자 행정절차 ~~법~~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종업원, 인천광역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록 공공관세를 의미한다.

47. 유품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법률 제6183호 문화재보호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고고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를 가진 고등 화석, 고대 유물이나 구조물, 및 기타 문화를 의미한다.
48. 유입자점 : 사업시행자가 원천물역으로부터 하수를 배수하는 지점으로서 별첨 1(본 사업시설) 광 빌딩 1층(집무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9. 유지보수 및 관리 계약 :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준비하여 원천물역시에게 제출한 본 사업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0. 유출자점 : 사업시행자가 처리된 하수를 배출하는 지점으로서 빌딩 1(본 사업시설) 및 별첨 1층(집무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1. 인천광역시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를 의미하며, 그 소관한 습개인을 포함한다.
52. 수급자위계약 :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사이에 체결되는 대출약정서 도록 그와 관련된 서류(이가율 또는 통화 위험 회피를 위한 조항은 포함함)를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과정과 계약하는 보증서, 민책약정서 기타 미와 유사한 유형서를 포함한다(사업시행자의 주주들이 제공하는 푸른위디플에 관한 약정서 제외).
53. 선구기관 회계법인 또, 평가법인 등으로서 수시로 본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푸른위디플에 관한 약정서를 말한다.
54. 준공확인필증 :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발급하는 본 사업시설 공사 준공의 흑록 확인서를 말한다.
55. 시장률 : 본 사업시설(本事業施設) 또는 ~~운영~~ 중의 가격을 말해 또, 자연시가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있는 ~~유형~~ ~~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56. 층집단 : 별첨 1(본 사업시설)에서 설정된 하수원류 말한다.
57. 종사업비 : 별첨 3(종사업비 및 운영비)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비의 총액으로서 단기부수별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58. 종선순회체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회입계약에 따른 조달하고 청탁하게 된 사업에 두입한 타인자본(투자자)이 농급 이상으로 진행된 차관간접차본채권 포함)으로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상환부여가 하는 종각무위리감을 의미한다.
59. 종투자비 : 종사업비에 신설이자로 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60. 최소성능기준 : 별첨 4(분별성능기준 및 설자)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은 성능 표준의 기준을 말한다.
61. 품질수수량 :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에 기재되어 있다. 사업시행자와 인천광역시는 허용범위기준에 딱 맞고, 단체별 하수처리 수요를 충실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본 사업시설의 의뢰에 처리된 하수량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품상사용기준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하수량을 의미한다.

62. 하수관기 : 법적 1(본 사업시설)에 둑강과이 있는 사하관기를 제외한 모든 관로당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악화의 송도신도시 및 간수지역에 설치되는 하수관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63. 하수도법 : 대한민국 법률 제1895호 하수도법을 의미하며, 행정 표준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64. 하수량 :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되는 하수량을 의미한다.
65. 협약당사자 : 각각 당사자와 본 협약으로 설정된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 제 3 조 (해석)

문언상 명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에서 모든 용어 및 험수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상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에서 자본, 범류, 시행령, 규칙 및 고시에 대한 언급은, 당시사람이 넘리 한의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 현재 효력을 가진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고, 본 협약 체결 후 개정이 있을 경우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포함한다.
- ② 간수 협약의 언급하는 복수 형태의 언급과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뿐만 아니라 나란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본 협약~~ 부록을 참조한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우함과 이에 한정되지 않은으로 해석한다.
- 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의 포괄 표준 부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 제 4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 체결일 이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을 도모할 또는 불연석성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 민간부자법령 및 민간부자사업기본법 등에 기하여 이러한 고속법 또는 물질의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제 2 장 기본약정

###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인천광역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협약의 제3조로써 설정된 베이비아인과 환경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운영개시원으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 제3조에서 정한 주상사용기한  
동안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부여한다.

###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인천광역시는 균형도시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3조의 의거 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관리권을 인정·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수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사업의 설계, 자금조달 및 건설
2.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구상사용
3.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주상사용수익
4. 관리운영권에 관한 ~~(한) 사업체~~의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5. 인천광역시의 동의를 받은 기타 경비한 수익 등 사업의 영역

② 본 협약 및 관계 법령에서 명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기간  
동안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관리를 확장, 위임,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③ 본 협약에 특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사업시행자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상하는 원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인천광역시와의 합의가 요구될 경우  
인증을 이시화 협의한다.

###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본 협약의 당호한 이행과 본 사업도록에

설계, 사고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를 나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한 바가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별첨 11(보험)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을 통해 보험사고의 소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실은 인천광역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조 (인천광역시의 의무)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부지를 편도하고 본 사업부지와 본 사업시설물은 충분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둘째기 기관 권리로 본 사업기간 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사업시설 각각의 시설용량을 초과하거나 본 협약상의 우입수선 기준에 맞지 않는 허수의 세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하지 아니한~~
- 본 협약 및 첨부에 다른 하수관기를 활용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세정기원금 및 사용료가 본 협약에 따라 정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제 9 조 (사업이행보증)

- 사업시행자는 ①시 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제24조 제1항의 공시작수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충시연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이행보증료 및 증정 또는 활용기관 기금보증서를 인천광역시에 납부 또는 제출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④항에 있는 사유로 ①시 계획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시작수일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작수일까지 이행보증 제공 기한이 연장된다.

- (2) 제39조에 따른 사업자행사의 귀책사유로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을 종료 해지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남부한 현급을 인천광역시에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증금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 인천광역시의 부친사속 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양 시설에 관하여 준공확인증이 교부된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1항의 현급,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 (1) 사업시행자 지정 후 본 사업자실 조성 이전에 사업자행자의 어느 출자자와 지분율이 5% 이상 변경된 경우, 사업자행자는 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험명 조31 어느 출자자의 재결회나신의 지분 이전으로 인하여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사업자행사는 보통 즉시 인천광역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행자의 출자자들은 그 지분에 관한 대주인을 위한 ~~임명장을~~ ~~설정할~~ 수 있다.

#### 제 11 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 (1) 각 시설의 소유권은 그 시설의 존립과 동시에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인천광역시는 각 시설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을 그 시설의 소유권 확정과 동시에 설정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수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 제 12 조 (법령의 변경)

- (1) 법령의 변경은 사업체폐지 제출일 이후 사업시행자에 의한 본 사업 시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출령 또는 그 해상과 세부, 공수, 비상 또는 폐기
  2.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의한 인·허가의 단급 개선 또는 조정에 관한 주간의 대응, 변동 또는 폐지
  3.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의한 관련 법·허가의 폐혁 또는 폐개선(단, 사업시행사에게 해택 있는 시유로 인한 폐회 또는 폐개선은 제외함)
- (2) 인천광역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접수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변경의 연장 이후에도 농림의 경작 미천과 등등한 자질을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7조 및 제44조에 의한 조치를 포함함).

#### 제 13 조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4 조 (연체이자율)

- (1) 어느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지급미루로 분이행한 경우 분이행한 협약당사자가 지급할 연체이자와 산정은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인체이자, 기금기밀의 이인호무려(설정·취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다.)
- (2) 예(할)이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상의 납원, 사용료, 손해배상의 지급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을 지체 또는 불이행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2개 운행(그 중 1개 운행은 인천광역시의 시금고이어야 함)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인천광역시에 제작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초기 비용을 보전함을 증명하면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그 추가 비용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3 장 공사에 관한 사항

#### 제 15 조 (설시계획의 승인)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가 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의 신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부의 뒤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신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이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는 불가피한 경우 통보기간 단료일 15일 전에 시면 통지한 후 통보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본 협약과 사업계획서의 조건과 다른 이유를 들여서 불합리하게 거부 또는 기인하지 아니한다.

※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이 시유로 장 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이 제출될 수 없거나 실시계획이 그 승인 신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떠하여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법령상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간의 주사 협의가 유행성 감염증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계획이 그 승인 신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되지 아니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법령상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간의 주사 협의가 유행성 감염증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어느 한 시설에 한하여만 승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을 해지하기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여 제14로 제2항과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 16 조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별첨 3(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기재되어 있는 2000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 기준 균가한 93,890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

#### 제 17 조 (총사업비 변경)

1.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퇴지우수미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본조 제2항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2. 관찰기간 중 소비자로 가면 품질을 험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시비 등 품질수준을 구성하는 기용의 본동이 있는 경우
3. 본 협약의 내용 규정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우
4. 인천광역시에 책임 있는 사유로 품질수준이 변동하는 경우
5. 사업계획서 체결일 이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세금을 증감시키거나 증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6.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의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주가법 등 부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본조 제1항 제1호의 첨부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가 별첨 1(본 사업시설)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시별위에 대한 현경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 및 경비가 증갈되는 경우
  2. 공사 단위 법령(부수기과장 시설기준, 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 업무처관 일반지침, 물관식방식, 건조식방식,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품질수준이 증감되는 경우
  3. 품질과업감리체익을 위한 입찰 및 공시비 변경에 따른 감리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4. 불기장력 사유 기타 이와 동일하게 ~~증가되는~~ 시설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④ 총사업비의 증경은 별첨 12(세부제표 및 세부도면)의 산출내역서로 기초으로 하되, 단가 적용 기준일은 2000년 1월 1일로 하여, 동일지 이후 스마트물가변동율을 적용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종사업비를 변경해야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최대범위의 확인을 거쳐 인천광역시 또는 그 관할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품질수준이 품질수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제 18 조 (본 사업시설 및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용권)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침해의무도 부담하지 않은 채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면적 내에서 본 사업시설 및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용권을 행사한다.

- ②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행의 성과를 위하여 본 사업부지의 물류 및 통행권을 우여하고 본원 유통기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한다.
- ③ 시위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본 사업시행 및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 제 19 조 (위험물)

- ① 본 협약 당사자들이 본 협약 제11항에 명시한 용도 외의 물질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관리방역서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인천광역시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 위·허가 및 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또는 유관기관)의 본 사업부지 출입을 허용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수탁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 관련 추가비용(제2항의 조치로 인한 비용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거나,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이 경우 위험물로 인하여 발생한(제2항 사업시행)에 기재된 공사일정의 지연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기연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 제 20 조 (유물)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또는 유관기관에 우물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을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물이 발견된 위치와 주변으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관찰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의 유물 발견 사실 통지 이후 15일 이내의 동 일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주최하여 할 조기조치를 시행으로 동기화하여야 한다.
- ③ 유물 규모는 인천광역시 및 유관기관의 감동 및 확장 가능에 속해되며, 이와 관련된 예비사항은 유물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방전된 수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 관련 추가비용(제2항의 조치로 인한 비용 포함)이 발생한 경우, 등 비용은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거나, 본 험악에 따른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이 경우 유불로 위하여 법률(본 사업시설)이 기재된 공사일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에 상응하는 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 제 21 조 (보상업무 및 처리비용)

- ① 본 사업 부지의 대수림과 그 외 관련한 경정을 보장 기관 순회 보상업무와 기주대책사업 등은 인천광역시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실시체험에서 실한 가스불에 관한 공사 조공예정을 미전에 본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필요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의 토지대수 등 보상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료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의한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에 반영한다.

#### 제 22 조 (공사비의 산정)

별첨 3(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기재되어 있는 2011년 1월 1일의 평면사격에 근거한 본 사업의 금액은 79,284만 원으로 한다. <기일 2011.7.1>

#### 제 23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가수원로부터 30개월로 한다(시운전 기간 포함). 다만, 본 항과 제17조에 규정된 경우 당사자들의 험악에 따라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으로 인하여 도(도)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또는 유관기관에게 책임 있는 시설로 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수행에 지장을 끼친 경우이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재된 기간에 충분하여 또는 위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 기간을 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가 별첨 1(본 사업시설)에 기재되어 있는 본 사업시설의 공시범위에

####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설권 및 품공집사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있는 방해가 있는 경우
  3.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부지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4.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도본·인·허가 및 승인기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감리사의 판단에 의한 때 공사의 철길한 시행 또는 인선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공사 중단이 있는 경우(승단 사유가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반에 의한 것인 경우(개악함))
  8.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가 책임을 지는 제3자가 계약 또는 법률상 권리 혹은 의무 또는 위약하는 경우
- ③ 예산 기획보 등 경영성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규제사유로 인한 공사 차질으로 사업시행자가 한해, 전월 또는 하루를 달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정시한을 하거나 사용료 또는 사업시행자가 유의하는 경우, 구상사용 기간을 조정한다.

#### 제 24 조 (공사의 학수)

-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체(설계도면) 후 150일 이내에 본 사업시행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또는 그 전한국 회원방문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확인 받은 만큼 본 사업시설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또는 그 전한국 회원방문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협약 및 본 사업시설의 설치계획에 이르러 공시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기나도록 공사에着手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관부자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징벌을 취할 수 있다.
- ④ 본 사업시설의 공사 학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천광역시의 규제사유, 불가항력 사유 등은 본 협약 제17조 제2항의 미친 들판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 기관을 침투하여 본 사업시설(운도시설 또는 만수시설)의 공시착수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당시 사업자의 암의원 날짜기 공시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 25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작수일로부터,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5일까지 인천광역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등기별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성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권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진척 공정과 당해년도 예산편성표 및 지원년도 사용분이 표기된 공사추진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기·여전·본 사업시설의 공사 종료 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정부분에 관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사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준공일까지 1일당 총사업비에서 기정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인천광역시에 낼 것을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의 다른 ~~기정예정일~~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행자가 공사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기 못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에 지급할 지체상금의 총액은 총사업비의 10% 상당액에 한정된다.
- ③. 본 협약 제23조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
- ④. 인천광역시에서 책임 있는 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은 여행지체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따라 낼 수된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액에 달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기행자의 지정 주소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할 수 있다.

#### 제 27 조 (공사도급)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공사 시행을 위하여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사를 변경한 경우 이를 인천광역시에 제 분보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사와 시공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분 견설임차(이하 "하수급인"라고 한다)에~~는~~ 하도급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주거공사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8 조 (감리자의 선정 및 감독)

① 인천광역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와 관련하여 공사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엑스피셔널 제도를 실리자로 선정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실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와 스위프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감리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드리고 감독하도록 한다.

#### 제 29 조 (감리자의 외부 및 권한)

①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 공사 시행 관련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책임감리와 관련은 본 협약 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관련 법령이 의한 감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술검사를 받도록 하고, 각자는 기술검사 원로 후 자체 없이 사업시행사와 인천광역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30 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 부지 및 지정도 보상, 일정총설 보상, 본 사업의 원자년경 등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기초에 놓려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또는 본 조 제3호를 개의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가) 시공면원 :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부 시설시설의 시공과 희생 관리하여 발생하는 민원

※ 부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면원은 인천광역시가 직접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본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시공의 직접 관리하여 발생하는 사업면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유관기관의 지침이나 속도 등에 의한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의 해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배상금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31 조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인천문화 및 신급구단 대책을 준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안전지침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사업공무원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안전관리 일부를 수행한다.

### 제 32 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한 예정 준공일까지 빌점 1(본 사업시설) 및 별첨 4(은행성능기준 및 설치)에 기재된 군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공인기관에 대하여 수령된 시행성과서(보증수령 포함)를 전부하여 열점 10(사업간접자본시설 준공보고서) 서식에 의해 인천광역시에게 본 사업시설에 관한 주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최소성능기준이 충족되고 부조 제1항에 따른 주관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인천광역시는 그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주차법 및 민간주차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제부하며, 본 사업시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영권을 인정한다.

- ⑤ 본 사업시설의 최소영농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최소영농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조정 및 변경을 시행한 후 빌권 4(운영성능기준 및 절차)의 시운전을 반복하여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행한다. 이러한 반복 시운전에서 최소영농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즉시 인천광역시에 등록하고, 인천광역시는 그 등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용확인증을 교부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증을 교부받고 그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설정되는 즉시 본 시설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시한다.
- ⑦ 본 조에 정한 준공입사 청사는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승도시설 또는 만수시설)을 별도의 사업시행계획(※ 기재된 일정에 앞서 준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 33 조 (준공전 사용)

본 협약 제32조에 규정된 본 시설시설에 관한 준공확인증이 교부하기 전에 본 사업시설(승도시설 또는 만수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농지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증에 서부여기 전에 본 사업시설(승도시설 또는 만수시설)의 사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승도시설 또는 만수시설)의 준공후 사용(※ 개설되는 날부터 인천광역시에 대주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 34 조 (운전 및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누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사업시행자가 첨단화 관리관제 체계)의 대주 운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신중한 관리자로서의 소의의무를 다하여 본 협약이 제정된 사업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솔시화폐에 관한 예정 출금일(는 협약에 따른 연장기간 포함) 3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에 관한 투자보수 및 관리 계획을 합법적으로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인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밀한 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 본 사업시설에서 공공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험방지시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 완료 후 관호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 받아야 한다.
- ⑧ 제4항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안전진단 원전 비용은, 인천광역시에게 ① 원인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 35 조 (보증 및 법정 수질 및 제재)

- ①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보증수원의 판단 요소, 수질조사의 적자, 방법 및 민족에 관한 내용 포함)에 기재된 보증수원은 ~~성장성~~ 운전시의 수질을 떨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에 기재된 보증수원 및 영생수원을 위해 하지 않도록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는 이를 위하여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한다.
- ③ 차관된 자수의 수질이 법정수질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질 기준 위반에 대한 원인 및 개선대책을 인천광역시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시정 조치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그의 거래처유로 인하여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의 보증수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에게 별첨 7(위약금)에 기재되어 있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별첨 7(위약금)에 기재되어 있는 위약금에 포함하여 소비자불기변동률 및 그 적용에 관한 본 협약 규정이 적용된다.

- ⑤ 본 협약과 다른 규정이 불구하고, 보증금과 브랜드 관련한 사업시행자로 어느 사업년도 대원의 위약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 연간 운영비의 2%, 원인 위약금과 총액은 당해 연도 연간 운영비의 7.5%로 합침됨과, 다만, 위 위약금의 총액에는 결정수를 위반으로 인한 행정벌금과의 별호나 등이 포함된다.
- ⑥ 제5항에 따라 기준된 위약금의 총액이 당해 연도 연간 총운영비의 7.5% 상당액이 단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의 저작樸수 기록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36 조 (하수량 자료 제출)

사업시행자는 매월 본 사업시설 원수/유출 시점에 설치된 유입/유출 하수통 측정 계기류 읽어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당해 월의月初 5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입/유출 하수량 물량 자료를 제출하며, 인천광역시는 하수량을 파악한다.

#### 제 37 조 (운영비용)

운영비용(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은 열전 30(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기재되어 있는 총운영비 142,67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

#### 제 38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운영에 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구상사용기간 중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인·허가 등은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 5 장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 제 39 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만족도가 아니하는 한, 본 사업시설의 운영자인 고등학교 20년간으로 하되, 만수준계급포장(별첨)에 명시된 것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어느 시설의 운영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품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경우

사용료 또는 드성사용기간이 협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 ④ 본 사업시설(송도시설 또는 만수시설)의 초기 관공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인천광역시가 상호 협의하여 제32조에 따른 춘궁간사를 기재하고 운임에 필요한 사항을 초기 확정하고 운영개시일을 명시지정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된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로부터 원시적 확정에서 정하여 전 공사원공에 걸친 전일까지의 기간은 부록 제1항에 정한 무상사용기간에 별도로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도 드성사용기간은 송도시설과 만수시설의 관리에 본 협약에 따라 한 일한 날짜에 종료된다. 다만, 만수종계평포장의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60년간으로 한다.

#### 제 40 조 (추생하수량)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본 사업시설의 하수량은 병형 4(운행성능 기준 및 절차)에 제5항을 바탕 같다.

#### 제 41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투자수익률 5.5%, 복리 15(제작비율 및 재구조율)에 기초한 6.93%(2000년 1월 1일 물류자산 기준)로 한다.

#### 제 42 조 (사용료)

- ① 본 협약에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형 8(사용료)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사용료(2000년 1월 1일 물류가격)는, 부록의 제44조에 따라 산정되고 운영개시일부터 적용되는 인천광역시에 정수국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기본사용료는 별령 9(사용료 조정)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까지의 기간 높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그 이후에 제44조에 따라 조정된다.
- ② 운영개시일로부터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지급되며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1. 무상사용 기간의 첫 12개월 동안 매월 균등하게 지급되는 확정금액 및

2. 20년간의 현재 부동사용기간 동안의 본 사업시행에서 처리된 하수량에 연율도(%) 사용료

③ 사용료는 각각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금, 관약 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인천광역시의 부담으로 한다.

#### 제 43 조 (사용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부정사용기간동안 본 사업시행에 속입·처리되는 하수량을 정산하여 신설된 월별사용료를 매월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인천광역시는 동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사업시행사에게 지급한다.

② 인천광역시가 사용료 지급을 거체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조 제1항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이일부터 제14조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신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 44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① 부정사용기간 중 ~~제14조~~ 제17조의 사용료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비자동기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이러한 조정은 당해 사업년도의 예산부터 효력이 있다. 다만, 사용료는 신기료 및 슬리지 소비비의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별첨 9(사용료 조정)에 따라 예문기별로 조정된다.

② 본 사업기간 중, 제1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거나, 인천광역시의 귀족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용료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간의 힘의식 악화여인간투자업 및 민간투자업 시행점에 따라 필요할 조치를 거쳐 제45조의 제정지권을 하거나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한다(단, 사업시행자의 운영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동등한 조치를 기준). 예령 변경으로 인한 범인세(주민세) 등 부가세 포함; ③ 인하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 협약의 원심으로 헌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명령미수여 감소하는 경우에도 ④에 상응하게 사용료를 조정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될 경우, 본 협약 당사자들은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또는 기타 본 협약의 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채정의 상대(제11조에 규정된 사업주와공)이 높이는 김교가 되도록  
변경한다.

- ⑤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본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하는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협약 제9항(분쟁의 해결)이  
적용된다.

## 제 6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

### 제 45 조 (인천광역시의 지원)

- ① 인천광역시는 민간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시행령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는 자금이 한계된 채정자에게 ~~제11조에~~ ~~제11조에~~ 사업시행자로보디의 채정지원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자~~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두  
기간 종료일로부터 ~~한정자~~ ~~한정자~~ 대하여 제14조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사산하여 지원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에 따른 채정지원에 있어 담해 채정지원금액에 대한 범위에  
기다 이에 부과되는 주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세금액을 계약한 사업시행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이워이행자가 청구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한다. 단,  
사업료는 보정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채정지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금 또는  
세종기원금 수입에 따라가는 범위에 부합되는 범위로 지원하기 아니한다.
- ④ 슬러지 또는 기타 본 시설시설의 폐기물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 ⑤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기간 중에 사업시행자가 ~~한정자는~~ 충사법의 일부에  
따라서 개정지원금을 학제 기는 경우, 해당당사자는 그에 관한 일자, 사용료 조정,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며, 그 협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 제 46 조 (사용료수입 보장)

- ① 운영개시일 이후 보상시용기간 종료일까지의 매 사업년도에 사업시행자의 연간 총사용료수입이 사업시행자로 운영년도와 부기 가치서를 제외한 실제 사용료수입(당해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의 80%이 미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부족분의 개선을 명시한 보고서를 전부하여 인천광역시에 그 부족분의 사고율 정구할 수 있다. 위 지침의 정구가 있을 경우 협약당사자는 위 부족분이 보전 방안에 든하여 협의하며, 위 지침 제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족분을 제출하거나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당시용기간을 조정한다. 다만, 어느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기간 적용에 따른 부족분 및 조정률을 제한한다. <개정 2011.7.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시기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적폐시유가 아닌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의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재정적 관련을 초래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에 관한 조속한 조치단에 협의한다.

#### 제 47 조 (행정지원 및 기타 지원)

- ① 민간부지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한 행정설치 이외의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위·하가의 취득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제반절차를 선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자금차입기간, 대출단과 대출 실행, 대출금 관리와 사업시행자의 권리운영권에 관한 고지방문 설립 기타 단체의 취득, 관리 및 통제, 사회간접자본개선의 알리고 둘째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사업자임 계약 체결 후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거나 경우 사업시행자로 차이금 대체 낸과 사전에 협의하고자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출단과 자금차입기관을 협의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약정 관련 계약서(들)상의 조항을 이행 이유의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뿐more 출장원 관계 담장을 실행하지 아니 경우 인천광역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거나 내용을 포함시키야 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조달, 신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의한 민국 세법상의 적용 가능한 관리설정을 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의를 제공한다.

⑥ 원천왕이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사, 자본에 대한 투자는 및 원금의 외국환으로의 환전 및 해외 은행계좌로의 송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 제 48 조 (진술 및 보증)

① 원천왕이사는 본 협약별 현재 시기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 보증 및 약정한다.

1. 인천광역시는 한국밖에 따라 유료하게 존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진다.
  3. 원천왕이사는 본 협약의 제정 및 소진의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의 수단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4. 관할권 있는 법원, 성무기관 또는 ~~관할기관~~ 또는 이들의 대행기관에 의한 본 협약에 의하여 예정된 행위를 행하는 또는 금지하는 법령, 규정 또는 서면이나, 그로인 소송, 행정, 조사, 기획 진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인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 보증 및 약정한다.
1. 사업시행자는 한국밖에 아니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주식하는 주식회사이다.
  2.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권한을 가진다.
  3.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제정 및 소진의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의 수단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 제 49 조 (사업자행자의 귀책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설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과실사유로 인정된다.

- 사업시행자가 충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제24조를 위반하거나, 공사 완수 후 사업시행을 지원 또는 시회하여 시장의 계약 시행이 불가능하고 위생되는 경우
- 본 사업자들에 본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운 중대한 결단이 있는 경우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피한선고가 있거나 회사회복절차 또는 회의점수의 개시가 있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해산 또는 청산을 결의한 경우(단, 종법 제227조 제4항에 의거해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
- 사업시행자가 관리 위임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들을 설명한 사유 없이 중대하게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민간부지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 경우
- 설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위한 지구(주)단위 필요한 자금(사업자마다 제설과)이 마련한 경우
- 설시계획의 승인(수령)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가 불합리하거나 작성되었거나 그로 인해 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유의 제출 기한으로 설시계획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단, 인천광역시는 특별한 사유 제출 요구를 하여, 사업시행자는 그의 소속재산권 원인 설보나 사업시행자이 세3자에 대한 기밀유지의무에 의해서 농개가 부지체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50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 인천광역시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무원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요구)로 인해 공사장이 증가되거나 본 사업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본 협약 제21조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보상의무 서류 기한으로 연장하여 공사비 청구 또는 시책이 기한과는 경우
- 사업시행자에 따른 본 사업 시행의 불리한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한 경우

## 민관동자법 시행령 및 민간동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조건 해석

4. 쟁송된 사유 없이, 사용료 지급의 기점 또는 차체나 본 협약에 따른 사용료 조정의 기일 또는 시기가 있는 경우
5. 인수상여시가 관련 법령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여버려서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6. 인수상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청탁금지 및 중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 51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 불가항력)

- (1)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서 비정기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을 포함한다.
  1. 자연, 홍수, 해일, 대풍, 폭풍, 낙뢰,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복원물의 손상, 방사능 또는 핵 폭발, 학공기 추락, 초음속으로 운행하는 항공기의 저항, 물결과 물위변동이나 유동의 발생
  2. 전국적이거나 사회/산업 전반적인 파업
  3. 실무실행, 경제환경 등 본 사업 환경의 급변으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의 수행에 미치한 악영향을 보이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
- (2)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을 포함한다.
  1. 천왕 또는 사법, 관공의 침공행위, 내란, 반란, 폭동, 치안수요 기타 기타 준하는 사유
  2. 민간동자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포함한 본 사업시행 또는 본 사업 시행기에 따른 물수

3. 확진 및 해외송금 통지, 교통수단의 운행 복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중앙정부 또는 11 대령기관에 의한 불사업시설의 수용
  5.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의의 법령의 변경
  6.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서 복합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
- (5)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5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되,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체 사유의 기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 제 7 장 불가항력

### 제 52 조 (불가항력 사유의 동지 및 대책 협의)

- ① 협약당사자(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속히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사년으로 통지한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통지 가능 시점에 통지 지연 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통지로 수령한 힘약당사자(제1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에 반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일정의 동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이의의 근거를 명기한 서면으로 이의의 통지를 한다.)
- ③ 이의의 통지가 등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회되지 않을 경우, 이익에 관한 분쟁은 본 협약 제9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된다.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 ④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제기된 이의의 통지가 통하지는 경우, 위험증여사 및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 원재료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존재가 인정될 경우, 협약당사자는 조속히 사임

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견 방인 및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 제 53 조 (공사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시작기간 동안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불가항력 사유의 지속에 따라 되는 기간 만큼 공사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다(제4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로 해까지 아니함).

### 제 8 장 협약의 종료

#### 제 5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하기 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 경우 관리운영권을 소멸하여 인천광역시는 관리 별령에 따라 관리운영권 등록을 양도한다.
-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시장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인천광역시에게 인계한다. 위 절차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가능 으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규칙보수 및 대수신 계획에 따른 수리, 보수 또는 고정자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 전에 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보수 및 교체를 시행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명구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유는 그 당시의 법률로 따라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거하여 정하는 바가 아른다.

#### 제 55 조 (협약의 종료해지로 인한 종료)

C. 인천광역시에 의한 측도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자행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49조에 정한 사업자행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인천광역시가 사업자행사에게 둘 이상을 치유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행사가 귀동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상을 치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 제2항의 사업자행사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D. 사업자행사에 의한 측도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자행사는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본 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행사로부터 사용료의 지급 또는 사용료나 노상사용기간의 조정, 해제지원 등의 부 협약 제50조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에 따른 조치를 척탈 쟁을 요청하는 시연동지를 받고도 인천광역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자행사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낮은동지를 떨어하고 인천광역시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기금의무 불이행의 경우) 또는 60일(기타의 경우)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충로시설 또는 만수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3. 제55조 제1항의 인천광역시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E. 기타 사유로 인한 강제해지 - 제51조 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유의 해소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희약당사자( 당사자 및 상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템을 종료해지 될 수 있다.)
- F.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시 후 당사자들은 본 템의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90일의 기간 동안 협의한다.
- G. 본 조 제1항의 협의기간 종료시, 당시자율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동기를 소례한

불이행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해지의사를 통지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풀브리하여 시면으로 통지한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조에 의한 협약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 제 56 조 (해지시 지급금)

- ①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 및 본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법약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신청권 전환기 관이 별첨 5(해지시 지급금 차단)의 산정공식을 참조하여 산정한다.)에 산정공식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 ② 사업시행사 거액으로 인한 본 협약 종도해지의 경우 원천孳식이 다른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해당권이 설정될 경우에는 해당권자,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2. 무상사용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인천광역시의 거액으로 인한 종도해지의 경우 원천孳식이 다른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된다)
  2. 무상사용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정치적 불안정의 사유 및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종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 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된다)

2. 무상사용기간 초인 경우 본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시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단) 비생체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하게 주급여는 사유로 인한 강도해지의 경우 민원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충돌을为了避免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건설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의 누적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 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된다)

2. 무상사용기간 초인 경우 본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시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제1항 대신 제5항에 불구하고,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시 포함되어 아니한 본 협약상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은 해지시 지급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제 57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단) 본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해지시 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본 협약이 종료해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관련 운영설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편성을 수령한 때에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해지시 지급금에서 동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보험금이 손상된 시설의 복구나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사용된 때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2. 본 협약이 종료해지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관에 대하여 상환을 원하지 못한 체포를 인천광역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회복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된 경우, 해지시 지급금에서 인천광역시 또는 제3자로 인수한 체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주관과 권리분야가 확다.

3.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액이 대하여 할미영사업자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협약 제62조가 적용된다.

- (3) 협약당사자간에 천문기준 지침의 할당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자의 천문기준을 지정하여 신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약당사자가 층의하여 지급금액을 신정한다.
- (4) 본 협약과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종료해지일로부터 해지시 기준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4조의 다른 연체의 사용으로 계산되며 이자율 사용된다.
- (5)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에 따라 지급할 때까지 지급금(또는 배수가)은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드는 어떠한 계약이나 조건 없이 상계 또는 기타의 방식에 의한 공제나 원전정수 없이 지급된다.

#### 제 58 조 (협약종료시의 효과)

- (1)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 및 사업부지의 모든 배타적 절용권, 사업시행권 또는 관리운영권은 협약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가능적으로 소멸되며 인천광역시에게 즉시 귀속되며, 부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이러한 관리운영권의 소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한다(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 (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들 송재하는 것에 힘써한다. 제54조 제2항 이외에 부상사용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납세가능한 부상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으되, 이 경우 그 조건은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별도의 협약으로서 결성한다.
- (3) 본 협약의 종료시 인천광역시는 대기의 지급 없이 본 사업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모든 선거, 수도설비, 그물통, 경비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투과 및 신속 통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와 장비, 공구, 어댑터그리고 남아있는 부품과 화학제품 기타 필요한 물자의 등록, 부동산 등의 사용권 회복 및 인수한다(단, 사업시행자가 이전 또는 미개찰 수 있는 것이라면 제외).
- (4) 본 협약상의 일부 이행의 표정에서 본 사업시설을 위탁·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직원이 특정 목적의 달성을 개발한 경우, 그 목적제한권은 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자의

소유로 한다. 본 협약이 브상사용기간 중에 종료해지 되거나 협약 기간 만료로 되하여 종료되고 본 항의 소속자(수탁)가 본 사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인건증역사 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수으로 사용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협약의 종료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수거보수처(수탁) 및 은영자(수탁)를 인건증역사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시까지 이를 배출하여는 아니된다.
- ⑥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건증역사 또는 본 협약 및 본 사업시설의 수탁인이 부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을 승계할 때까지 인건증역사의 관리하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건증역사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본 협약 해지일 날짜와 조건에 따른 지급한다. 단, 위 운영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59 조 (협약종료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 본 협약의 종료시 인건증역사는 본 사업을 전수한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원만한 ~~안전~~~~위생~~ ~~정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종료해기는 공정 또는 종료해지일 전후 본 협약에 따른 사항에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한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적용 수 있는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증 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 보상, 구제수단 또는 기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계속적인 것으로, 주후의 권리에 대한 영향 권리의 유효기로 삼지 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에 따른 효력의 발생일이 도 불구하고 광장의 인건 증역사 및 본 사업시설의 인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우선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건증역사는 이에 적절하게 협력한다.

###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의 종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이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차입 계약에 따른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반환 기한이 이의 성설의 동일본 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주단의 대리운영)은 서민통장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후보에 대한 동의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추천의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대주단의 대체사업자 추천을 인천광역시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주단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대체사업자는 대체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한다. 대체로 이후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일들은 대체사업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사업시행자 대체가 이루어져 인천광역시와 대체사업자(대체일이 존제하), 협약의 통보받지 않은 표는 가공치 입재악성의 기한이 이미 상실 사용된 대체사업자가 시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전하여 협의한다.

## 제 9 장 분쟁의 해결

### 제 61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모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속성선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기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한다.

### 제 62 조 (분쟁금액)

- ①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지급이 명시된 부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등기의 해결시까지 그에게 금액의 지급을 부른한 권리( )를 가진다.
- ②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모든 금액은 낮은 분율이 수취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노래하다. 당해 납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자의 월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세14조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를 기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 63 조 (전문가에 의한 결정 및 중재)

- (1) 본 협약의 조지, 효력 초기 및 초기에 드는 문제를 포함하여 본 협약으로부터 조(1)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조에 따라 해결된다.
- (2) 일반 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문장이 발행하였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 본행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시사를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던 경우, 그 문제는, 당시사들이 기술적 성질의 것이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서  
해결된다(단, 기술적 성질의 문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서 해결된다).
- (3) 당시자들이 시면으로 기술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합의한 문제는 전문가에 의한  
결정에 회부된다. 전문가는 당시자들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당사자들이 본행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전문자를 목적하는 경제 합의를 수 있는  
경우 또는 선임된 전문자가 활동 불가능하거나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한 당시자 중재원이 의해 선임된다.
- (4)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전문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활동된다.
  1. 전문가: 공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활동한다.
  2. 전문가: 결승에 있어서의 결자를 결정하며, 가능한 한 선입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그의 결정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전문가의 결정 결과 일방 당시자가 타방 당시자에 대하여 기술적 성질은  
당사자의 결정이 당시자들에게 적용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
  4. 합의적인 법률 비용과 전문가의 비용을 포함하는 결제 비용은 당시사들의  
균등하게 부담된다.

- (5) 전문가의 회한 결정으로써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성질의 문제는 본조 제3항의  
동지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기술적 성질의 문제는 본조 제2항의 14일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방 당시자의 경구적 이하의 3위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원들은 속한 국제상거래법학원회(CITRAL) 중재규칙에

과 선정된다. 종자(=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드엔국 총괄 대법원회(DCITRM)) 관세규칙에 따른 행하여 진다. 관세 징수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한국어본과 영어본 사이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당시자율은, 관련 법률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관세부의 관세는 종교적이며 등사자들이 위하여 그 속력이 있음에 놓이한다.

## 제 10 장 기타 사항

### 제 64 조 (대주관의 당보)

-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위에 대주관을 위한 단속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안전광역사는 이러한 단보를 설정해 동의한다.
- 안전광역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관과 이해에 차별 또는 간섭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앞서, 대주관의 대리운행과 사업시행자로 그 취지를 통지하고 대주관의 대리운행 및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직접 할의하던 사업시행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안전광역사의 해지권은 그 시정기간 동안 행사된다.
- 대주관은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도급 권리와 의무를 인수할 권리로 가진다.
- 대주관은 본 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도는 권리와 의무를 안전광역사의 농어를 일어 세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권리로 가진다.

### 제 65 조 (민체 의무)

각 당사자는, 절약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재산의 대체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나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각 당시자(그 임원, 기사, 계열회사, 대리인, 직원, 수급인 등)(이하금액 포함)의 주워 또는 부작역에 의하여 야기된 종류와 성질을 불문하고, 정부, 관공, 춘실, 책임, 비용, 경비 또는 손해로부터, 상대방 당사자(그 임원, 기사, 계열회사, 대리인, 계약, 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를 탄핵시키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다만, 면책을 청구하는 당시자와의 의식이나 부당행위(?)는 험악상의 하드볼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 제 66 조 (결과손해 등)

이느 협약당사자도 시운 허리를 불문하고 협약의 이행 표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또는 경별로 손해에 관하여는 상이방 담사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67 조 (제무보고서)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의 회계准则에 따라 회계정부를 작성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회계정부를 데면 감사하게 하고 회계정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인천광역시에게 제출한다.

#### 제 68 조 (기록유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제 69 조 (검사)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제68조의 기록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0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포괄 및 그 속제인에 대하여 효력을 기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속제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도 해석하지 아니한다.

#### 제 71 조 (인천광역시의 협약준수의무)

①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이 사내설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수입에 대하여 그하고 본 협약상의 인천광역시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 집행, 판결, 가압류, 기처분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와 관련하여 등기 행위, 주권민사 등을 이유로 민법 또는 관세의 즐증을 하지 않기를 하다.

### 제 72 조 (일부무효)

특정 관련 법률상 본 협약상의 어느 규정의 위법, 부호나 실행불가능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관련에서의 유효성, 적용성이나 전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련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상의 타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73 조 (국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행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금사자간의 기타 양정, 또는 협약당사자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수를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나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예외한 경우, 조건, 보증, 양정이나 선수에 준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 제 74 조 (비밀유지)

(1) 협약금사자들은 본 협약이나 서면에는 없더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거나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여 어떠한 자에게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개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기·간접적으로 확득하기 않은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장내익의 서면 기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3. 법원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4. 증권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
  5. 종속, 사병 또는 행정 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6. 정보공개 담당자의 명증서를, 모임회식 또는 일용기반 분야 대행 성트의 공개
- (3) 제2항의 경우: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와 부과하기+ 실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한다.

### 제 75 조 (양도)

- (1) 제64조 제1항과 본조 제3항을 해석시 이니하고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관건으로, 시장기행자(은 험악성이 그의 권리 및 이익을 양도, 위임 또는 도급할 수 있다. 단, 이는 본 험악상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로부터 사업시행자를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이 시면 농의 없이 본 험악성이 그의 권리 및 이익의 일부 또는 일부를 양도, 위임 또는 도급할 수 없다.
- ③ 본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에게 본 험악상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자와 계약하는 간접증권계약, 충산, 수입, 운행계약, 자본재산권 등 기타의 권리 및 재산을 내주든 또는 그 대리인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양도하거나 그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주식은 대주단 또는 그 대리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 제 76 조 (시변통지)

- (1)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② 각 험악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 1. 인천광역시에 대한 통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8  
수신 : 인천광역시청  
참조 : 인천시민자유구역 실장  
전화 : 032-453-7567  
팩스 : 032-453-7549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총국생명빌딩 19층  
수신 : 문경베큐리아인천본점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 문경베큐리아인천본점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 : 02-2122-2920  
팩스 : 02-2122-2940

(3) 협약금 사용하는 주소의 명명을 본증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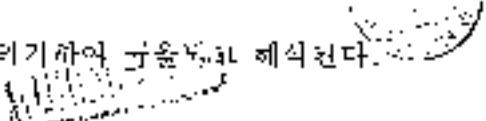
#### 제 77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학정에 의해 하단 헌정하거나 보완권 수 있다
-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1조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설득하게 협의한다.

#### 제 78 조 (원어)

본 협약은 한글문과 영문본으로 작성된다. 다만, 양자 사이에 상충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 제 79 조 (준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법에 의거하여 구을부로 해석된다.  


[서명란이 다음 페이지에 이어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첫나리에 기재한 글씨의 본 험에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인/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인천광역시

성명 : 송영길  
지위 : 인천광역시



###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

성명 : 인천 중역시 남동구 계창동 502-10

지위 :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스타보 미케스





인천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별첨 목차

- 별첨 1 혼 사업시설  
제 1 부 - 혼 사업의 범위  
제 2 부 - 승드시설  
제 3 부 - 만수시설
- 별첨 2 사업신청 일정
- 별첨 3 출사업비 및 운영비  
제 1 부 으락  
제 2 부 - 출사업비 (술술)  
제 3 부 - 출투자비 (증정)  
제 4 부 - 혼운사업비 (술풀)  
제 5 부 - 운영관리비  
1) 운영관리비 규모  
2) 운영관리비 납역
- 별첨 4 혼연수기준 및 설자  
제 1 부 - 송도시설  
제 2 부 - 만수시설
- 별첨 5 해자수자금고 계산  
제 1 부 - ~~각종부자금고의 총 산식~~  
제 2 부 - 미래현금흐름 순현재가치의 정의 및 산식
- 별첨 6 출공탁인필증
- 별첨 7 위탁증
- 별첨 8 기술사용료
- 별첨 9 사용료 조정
- 별첨 10 사회간접자본사업 증정보고서
- 별첨 11 보험
- 별첨 12 제1차표 및 제2차표 (CD-Rom 첨부)
- 별첨 13 전부금액  
제 1 부 - 송도시설 평면도 및 운동경계  
제 2 부 - 만수시설 평면도 및 운동경계
- 별첨 14 자동적 자자출입문 마련 대수선후획서 (CD-Rom 첨부)

**별첨 1** (본 사업시설)

제 1 부 본 시설의 번역

제 2 부 송도시설

제 3 부 관수시설

（略）  
（略）

## 제 1 부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 및 본 사업시설의 범위는 서울시청자가 2001년 1월 22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이 청부도 즈간과 항의권 변경 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1.1.1 본 사업시설의 범위

사업시행자는 다음을 위하여 헌책노는 경내 내에서 별법령 제2부 및 제3부에 기술되어 있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 각 시설의 유형별 특성: 농
- 2) 각 시설의 유통지점 성격.

본 사업시설의 범위는 별첨 13(첨부도면)에 명시되어 있다.

본 사업의 범위는 별첨 일 6-11(본 사업의 범위)과 같다.

표 1.1      본 사업의 범위

범위	속도시설	만수시설
급증증설	자그마한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지금차입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증개선프장 및 차집관거
설계	기본 설계 및 협상 중 항의권 변경 사항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 및 협상 중 항의권 변경 사항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증개선프장 및 차집관거
시공	기본 설계 및 협상 중 항의권 변경 사항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 및 협상 중 항의권 변경 사항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증개선프장 및 차집관거
시공장 & 설비 시설	시운전 절차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인천광역시의 출석 및 승인)	시운전 절차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증개선프장 및 차집관거 (인천광역시의 출석 및 승인)
운영 & 유지	운영설정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운영설정 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는 신설 하수처리장, 증개선프장 및 차집관거

본 사업시설의 범위는 별첨 일 1.2(본 사업시설의 범위)와 같다.

표 1.2 본 사업시설의 능력

시설	송도시설	만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p>신설 토동 및 건축 분야: 30,000 톤/일 기존 분야: 10,000 톤/일</p> <p>Bioslyr 공통</p>	<p>신설 70,000 톤/일</p> <p>Azerit-P 공통</p>
증기발전소	<p>기존 송도모수증기발전소 TM/TC 설비 신설 및 운영유지</p>	<p>수소증기발전소 <math>Q=22,100</math> 톤/일</p> <p>기존 만수증기발전장 TM/TC 설비 신설 및 운영유지</p>
차선판거	<p>제작 설계 및 하수 관로 관류: 1500 x 114M</p>	<p>신설 5.848 KM</p>

표 1.2 본 사업시설의 능력에 따른 사항을 추가한다.

- 수집자동측정시스템(TMS) 관리·운영
- 금동수로 운영비는 관자시설 또는 새설수로 또는 관계없이 민수시설 운영 관리비로 적용하여 운영한다.

## 제 2부 송도시설

### 1.2.1 송도 주요 시설

송도시설은 신설 하수처리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시설물의 세운 일자리는 표 1.3, 1.4, 1.5 및 법령 13(첨부도면)의 유형과 같다.

표 1.3 송도시설 - 하수처리장

시설물	규격	수량	
		트럭	기수
총사지	3.0m(ø) x 4.41m(H)	2	1
유출펌프장	16m(W) x 18m(L) x 13.3m(H)	1	1
일자침선장	4.24m(W) x 9.61m(L) x 5.93m(H)	3	1
생물관응조 (1 차)	6.1m(W) x 10.35m(L) x 7.16m(H)	12	4
생물관응조 (2 차)	2.92m(W) x 3.98m(L) x 4.63m(H)	9	3
3 차 BOD 처리장	3.75m(W) x 4.05m(L) x 3.4m(H)	3	1
증식식농축조	7.6m(ø) x 5.15m(H)	1	1
DAF 농축기	1.0m(C) x 3.75m(H)	1	1
물수시설	23.4m(W) x 23.2m(L)	1	1
UV 소독조	10.0m(W) x 4.05m(L) x 2.55m(H)	1	1

표 1.4 송도시설 - 건축물

구분	항목	시설물 개요
하수종합	노지면적	22,760 m <sup>2</sup>
	건축면적	4,322 m <sup>2</sup>
	연면적	3,864 m <sup>2</sup>
	층고	지상 2 층 지하 1 층
	초고높이	11.50 m

표 1.5 송도시설 - 품계 평프장<sup>1)</sup>

항목	송도 품계 평프장
펌프장 규격	13.0m(B) x 16.8m(L) x 4.0m(H)
흡수정 용량	546 m <sup>3</sup> /h × 1

주 1) 인천광역시 기관시설물 인수

### 1.2.2 설계 및 시공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설치기준 및 기술규격에 따라 송도시설을 설계 및 수급한다.

- 1) 기본 설계 및
- 2) 흙성 등 합의된 기본 설계에 대한 변경 사항.

현상 중 험악한 변경 사항은 기본 설계에 우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1.2.2.1 기본 설계

도간투자등의 규정에 의한 민간 제안으로서 2001년 1월 22일에 사용시행자 2-9 현광역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설계를 본 협약의 기본 설계로 한다.

본 협약의 설치기준과 기술규격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1.2.2.2 기본 설계에 관하여 협상과정 등 합의된 개정사항

본 협약상 기본 설치에 관하여 흙성 중 험악한 변경 사항은 다음의 수령는 기본 설계 및 기술 규격을 말한다.

- 1) 센서화 프로그램 사업 범위에서 제외.

#### 1.2.3 시운전 및 성능 시험

사업시행자는 발행 4(환경 성능 기준 및 절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시기에 따라 송도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 1.2.4 운영 관리

본 협약은 둘째 4 에서 정하는 최소성능기준이 충족되고 「인구」 차원을 초과한 시는 사업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송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그 외 시에 시집행자는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송도시설을 운영, 유지 및 관리한다.

（서명）  
（날짜）

### 제 3부 만수시설

#### 1.3.1 만수 주요 시설

만수시설은 신설 히수처리장, 1개 증기 풍크장 및 이에 연결되는 차집관거로 구성되고, 수원 소설물의 재원 옮 배치는 각각 표 1.6, 1.7, 1.8, 1.9 및 그림 1.9(침로도면)의 유형과 같다.

**표 1.6** 만수 시설 - 하수처리장

시설물	규격	수량	
		토목	기전
천수-1	4.0m(W) x 12.0m(H)	9	3
유인슬프장	5.7m(W) x 8.2m(L) x 3.5m(H)	1	1
생물판증조	20.6m(W) x 6.1m(L) x 8.9m(H)	3	3
? 2- 침진지	55.3m <sup>2</sup> (Φ) x 4.85m(H)	3	3
2호-출신차로배조	22.0m(o) x 4.03m(H)	1	1
남수시설	25.5m(W) x 35.5m(L)	1	1
디스크 롤드	4.5m(W) x 5.53m(L) x 2.27m(H)	6	6
UV 소독조	5.04m(W) x 12.0m(L) x 3.70m(H)	1	1
농업용수	4.0m(W) x 10.0m(L) x 4.0m(H)	1	1
방류 꼬프장	Φ400 x 1136m		

**표 1.7** 만수 시설 - 차집관거

노선	관경 (mm)	연장 (m)	비고
A- 끝-원	Box 2.0m x 2.0m Box 1.7m X 1.7m	1,258	자연유하
C- 원-원	600	2'3	자연유하
D- 원-라인	600 ~ 800	907	자연유하
시점-라인	600	1,345	암승유하
		1,616	자연유하

면적(㎡)	500	509	지면급하
총계		5.848	

수 1)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서장지구, 고령지구, 소래시구의 치관관거 건설 공사를 요청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되, 그 실시 및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노전 멀벌 기준에 관련 사항에 관하여 협의당사자가 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표 1.8 만수시설 - 중계 펌프장

항목	소래 중계펌프장	만수 중계펌프장 <sup>ii)</sup>
펌프장 규격	14.9m(B) x 10.1m(L) x 4.6m(H)	22.5m(B) x 19.1m(L) x 4.3m(H)
흡수장 용량	162.7 m <sup>3</sup> /h x 1	368.1 m <sup>3</sup> /h x 1

주 1) 인천광역시 3 존시설물 인수

표 1.9 만수시설 - 건축물

구분	항목	시설물 개요 <sup>iii)</sup>
하수 준찰	대지 면적	65,400 m <sup>2</sup>
차고장	건축면적	53,873 m <sup>2</sup>
	연면적	4,035 m <sup>2</sup>
	규모	지상 2 층 지하 1 층
	층고	12.8 m

주 1) 시설물의 규모는 실시설계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1.3.2 설계 및 시공

사업자는 차후 다음의 절차가 순차로 기술규격에 따라 만수시설을 설계 및 시공한다.

- 1) 기본 설계 : 6
- 2) 협상 중 합의된 기본 설계에 대한 경사화

협상 중 합의된 내용은 사항은 기본 설계에 우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1.3.2.1 기본 설계

민간투자율 9. 규정에 의한 협약 기준은 2001년 1월 22일에 사업시행자와 인천광역시가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기술도 설계도면 협의의 기본 설계로 한다.

기본 설계의 설계 기준과 기술규격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1.3.2.2 기본 설계에 관하여 협상 중 합의된 변경 사항

본 협약은 기본 설계에 관하여 협상 중 합의된 변경 사항은 다음의 수식본 기본 설계 및 기술규격을 말한다:

- 1) 생수 험 주입시설 사업범위에서 제외

### 1.3.3 시운전 및 성능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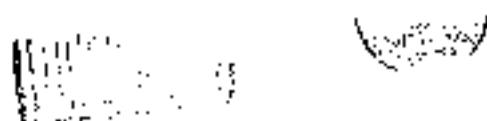
사업시행자는 결함 4(운영성능기준 및 절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간수 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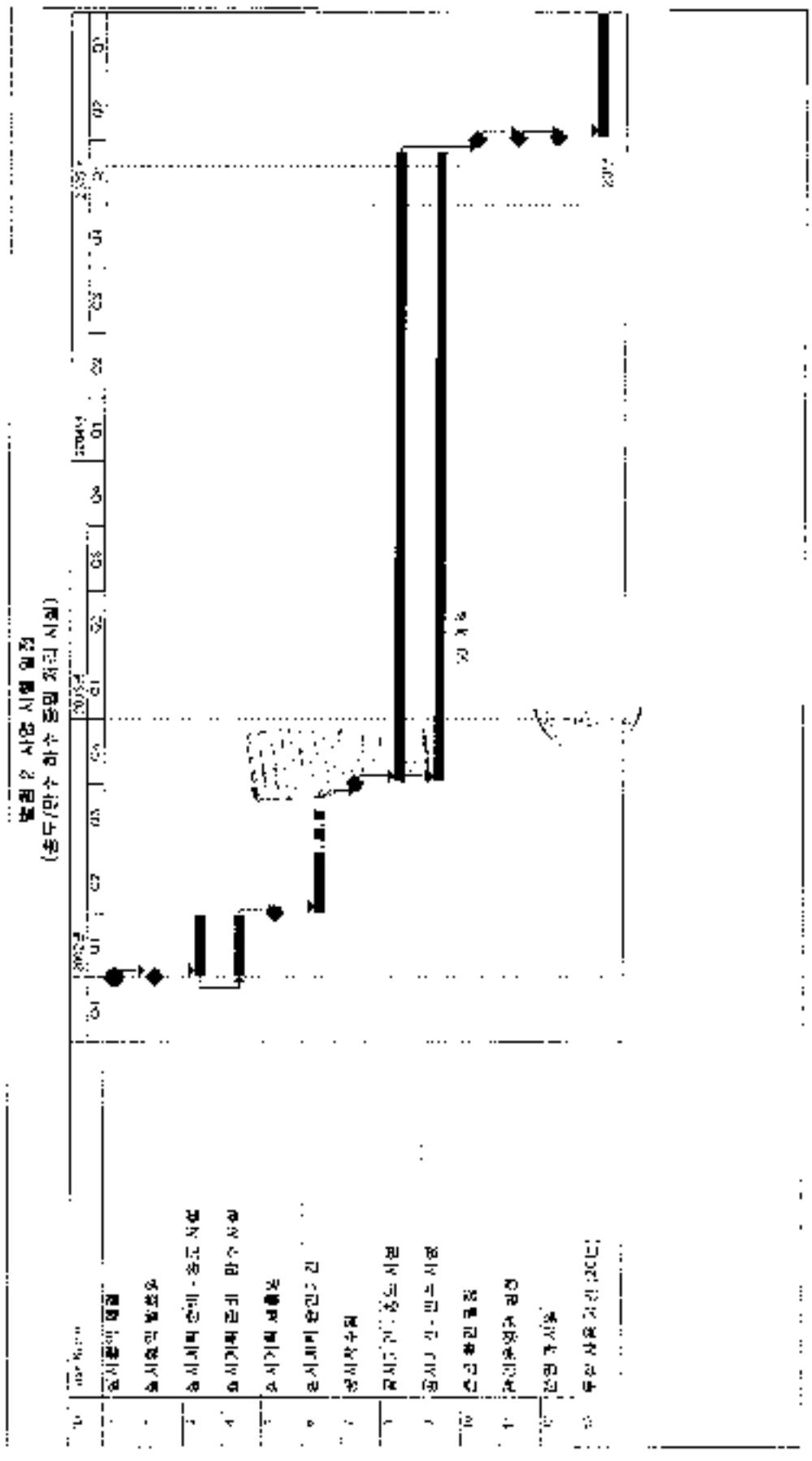
### 1.3.4 운영 관리

본 협약의 결함 4에서 정하는 최소성능기준이 충족되고 「인도」 절차의 완결 후,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라 민수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그 외 등으로 사업시행자는 본 협의의 조건에 따른 간수시설을 운영, 유지 및 관리한다.

별첨 2

(사업시행 일정)





### 부록 3 (총사업비 및 운영비)

- 제 1 부 사업 고액
- 제 2 부 총사업비 (수증)
- 제 3 부 출자자비 (총설)
- 제 4 부 총금지비 (수증)
- 제 5 부 운영관리비
  - 1) 운영관리비 요약
  - 2) 운영관리비 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

[별첨 3] 제1주 사업요약

제1주 사업 요약 및 예산(단위: 원)

항목	예산			증정
	1주 예산 (2011.12.26)	1주 예산(1주) (2012.1.3)	1주 예산(1주) (2011.12.31)	
1. 총사업비	85,554	94,345	93,895	
2. 총경비	127,624	146,268	142,872	
3. 재무·기타				
- 신용증여금	31,725	35,443	35,289	
- 신용증여금	74,026	82,791	82,542	
- 기타	-	-	-	
4. 결산부영수	12.28%	12.28%	12.28%	
(기타) 6.93%	6.93%	6.93%	6.93%	
5. 소지금	6,100	6,100	6,100	구급차운행비 (2012.1.3 기준)
	629	629	616	구급차운행비(2011.12.31 기준)

[표 3] 제2부. 총사업비

제2부 제2부 총사업비(단위: 원)

번호	금액			단위
	기준금액 (2001.12.26.)	인상률(%) (2002.3월)	인상금액(%) (2002.3월)	
1. 주거비	247	247	247	
2.伙食費	2,982	3.012	3,012	
3. 교통비	72,224	79.684	79,234	
4. 통신비	-	-	-	
5. 편의비	4,914	5,469	5,469	
- 쇼핑비(주거)	2,512	2,553	2,553	
- 통신비(주거)	140	158	158	
- 교통비(주거)	480	517	517	
- 편의비(주거)	1,332	1,416	1,416	
6. 음료료비	2,038	2,038	2,038	
7. 개인용품비	-	-	-	
8. 학습자료비	3,287	3,295	3,295	
- 학습비	10	10	10	
- 학습장비	177	175	175	
- 교재	3,100	3,100	3,100	
총사업비	85,554	94,545	93,595	

[�� 3] 제3부. 출수자비 (경상)

국내 - 해외 출수자비 (2000. 8월 ~ 2001. 8월) 원화(단위: 원)

번호	금액			%
	기준 대비 (2001.08.26)	연평균 대비 (2005.7.8)	전년 대비 (2001.7.1)	
1. 주자금	247	247	247	
2. 설비비	2,962	3,612	3,612	
3. 공사비	72,224	79,684	79,234	
4. 토지비	-	-	-	
5. 보증금	4,914	5,469	5,469	
- 신용보증비	2,212	2,583	2,683	
- 사업보증금 및 저당	-	-	-	
- 貸借料 / 租金	140	158	158	
- 보증료	483	517	517	
- 保証料 대체금	1,079	1,111	1,111	
6. 조업설비비	1,900	2,068	2,038	
7. 세제공여금	-	-	-	
8. 영수증금	3,287	3,295	3,295	
- 상여금	10	10	10	
- 관리보증금	177	185	185	
- 차입금	3,100	3,100	3,100	
총사업비	85,554	94,345	93,895	
9. 통관별도비	11,287	13,402	13,338	13.338
10. 세무회계비	8,609	10,398	10,398	10,398
총수지비	105,751	118,145	117,651	

[별첨 3] 제4부. 총공사비(실질)

(단위: 원(원), 대체로 원(원)으로 표기합니다.)

제작부	제작부			제작부
	기	설계도면	제작도면	
1. 소비비	247	22	225	
2. 인건비	3,612	1,082	2,530	
3. 물자비	79,234	25,427	53,807	
4. 운송비	-	-	-	
5. 부과비				
- 직무경비비	2,683	774	1,909	
- 사업비등록증수비	-	-	-	
- 관리점 습득비	158	140	118	
6. 관리비	85,954	27,345	58,589	

[별첨 3] 제5부. 운영관리부

(1) 운영관리비 요약

부서	기본운영비		운영운영비		기타운영비		계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	운영운영비 운영운영비 운영운영비	운영운영비 운영운영비 운영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총계	17,400	870	15,500	970	18,000	230	
부서별	상수원	9,780	920	11,100	1,100	19,000	120
	화재부	0.0	0.0	0.0	0.0	0.0	0.0
	환경부	0.0	0.0	0.0	0.0	0.0	0.0
	기획예산처	0.0	0.0	0.0	0.0	0.0	0.0
	기획예산처	0.0	0.0	0.0	0.0	0.0	0.0
	총계	37,880	1,940	24,760	2,340	41,700	2,510
부서별	환경부	12,000	0.0	0.000	0.0	12,000	0.0
	화재부	0.0	0.0	0.000	0.0	0.000	0.0
	상수원	0.0	0.0	0.000	0.0	0.000	0.0
	기획예산처	0.0	0.0	0.000	0.0	0.000	0.0
부서별	17,400	870	15,500	970	18,000	230	
전체	196,810	5,920	181,920	1,920	199,920	5,750	
부서별	196,810	5,920	181,920	1,920	199,920	5,750	
총계	171,674	5,450	46,963	1,440	167,819	2,471	

별첨 [3] 제5부 (2) 운영관련비 (단위:  
20000,111,71종금액  
원), 2012년 제작

기준 협약	@ 2010					수지표	수지표	수지표	수지표	수지표	수지표
	연간	분기별	연간	분기별	연간						
전체 예산	2,554,968	40,879,486	20%	24%	2%	1	59,684,050	0	0	0	0
운영 관리자	2,153,587	34,457,385	20%	24%	2%	1	50,307,782	1	50,307,782	1	50,307,782
운영 관리자	1,873,889	29,982,220	20%	24%	2%	5	218,870,206	0	218,870,206	0	218,870,206
운영 관리자	1,180,731	18,891,700	20%	24%	2%	8	220,655,056	2	55,163,704	2	55,163,704
운영 관리자	636,750	13,388,006	20%	24%	2%	10	195,464,873	1	19,546,487	1	19,546,487
기타	5,000	8,275	25	744,981,967	4	125,018,033	4	31,254,508	4	31,254,508	4
총 예산	1,284,247	20,547,045	20%	24%	2%	25	744,981,967	4	870,000,000	4	870,000,000
총 예산	1,284,247	20,547,045	20%	24%	2%	25	744,981,967	4	30,000,000	4	30,000,000

부록 제3항 제5부 제2항에 따른 예산액

부록 1. 회계연도별 재무

연도별 재무	@ 2010			연도별 재무			@ 2011		
	수익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수익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수익금	영업수익	영업비용
전체기초자본	2,554,988	40,879,486	20%	24%	1	59,884,050	0		
기타기초자본	2,153,587	34,457,385	20%	24%	1	50,307,782	1	50,307,782	
기초자본	1,873,889	29,982,220	20%	24%	5	218,870,206	0		
기초자본	1,180,731	16,891,710	20%	24%	8	220,656,056	2	55,163,764	
기초자본	836,750	13,388,005	20%	24%	10	196,464,873	1	19,546,487	
총한정기금(기금)	1,284,247	20,547,945	20%	24%	1.5	45,030,800	0.5	15,000,000	
기금					26.5	789,981,967	4.5	140,018,033	
기금					28	810,540	31,145,119	30,462,879	
총기금							930,000,000		
총기금								30,462,879	
총기금									31,145,119
총기금									930,000,000

### ■첨 [3] 제 5부 {2} 운영관리비 내역

#### 2000.1.1 기준금액

##### 부록 2. 전수료(요금) (20년 계약)

###### 기준 협약

	수량 m3/㎥	단위별 통금세율 kWh/m3	단위별 전기료 kWh/㎥	단위별 전기료 kWh/㎥	단위별 전기료 원/kWh	단위별 전기료 (원)
전수료(기준 F.S.)	70,000	0.395	27,652	10,093,013	53.61	641,096,427
전수료(기준 F.S.)	15,000	0.152	2,279	831,835	53.61	44,594,696
총수료(기준 F.S.)					53.61	585,681,123
총수료(기준 F.S.)	10,000	0.604	6,043	2,205,563	51.51	113,608,550
총수료(기준 F.S.)	10,000	0.666	6,876	2,509,740	51.51	129,276,797
총수료(기준 F.S.)					51.51	242,885,258
총수료(기준 F.S.)						828,566,380
설명부 단기	총 구 차관증과 전수 처리장을 인수/수사나쁜 0.7					
설명부 단기	a) 솔루션 풍팅의 제3C b) 시동설비의 차단 c) 차량출입구 점검 및 적용수지 대출					
설명부 단기	• 6·7월 2~2월, 봄 1월, 시즌 3월 및 농진 / 6월 • 일정: 10시간 주간 10시간 및 주간 4시간					
설명부 단기	• 수령 (을) 선택 (ii) : 일반 A 적용 • 사용 (을) 선택 (ii) 고급 A 적용					
설명부 단기	• 신설 (은) 고급 A 적용					
설명부 단기	• 신설 (은) 고급 A 적용					

기준 4. 사용 단기에 따른 전기료는 각각 평균 전기료입니다.

卷之二

## 부록 2 전력비율表 (2014 원元)

개설 협약

	수량 m <sup>3</sup> /월	전기 KW/월	전기 KW/월	전기 KW/월	전기 KW/월	전기 KW/월	전기 KW/월
인수 계정금	70,000	0.446	31,214	11,391,840	53,61	610,716,640	
인수(수)금 PGS	15,000	0.152	2,279	831,835	53,61	44,894,695	
인수(수)금	49,036	0.125	6,149	2,244,499	68,02	152,670,822	
					기수기	807,982,057	
전기계정금	10,000	0.004	0,043	2,206,563	51,51	113,608,650	
총구제작금	10,000	0.788	7,880	2,876,273	51,51	148,156,822	
기타 25	10,000	0.186	1,840	671,544	62,35	38,224,603	
					총 구제	289,989,975	
							1,107,972,036
전기부문금					총액(단위)		

송도자리장역 민속문화센터(단기), 디온 유

a) 신규 계약의 5-0

b) 이동신령의 3-0

디자인(설계) 및 수지나는

• 아울기 2 월, 복 1 월, 가을 3 월 및 동절기 6 월

• 일부 10 월간 소간 10 시간 및 24시간

송수부수사업부

\* 한연(월) 연락처 그룹 A 층

송수부수사업부 \* 전연(월) 전면별로 그룹 A 층

단수 하수 처리장 \* 신연(월) 전면별로 그룹 A 층

단수(수레)별 \* 신연(월) 전면별로 그룹 A 층

단수 출기 체크부 \* 2000년 3월 속지 대금을 적용

기준률 사용량에 따른 청구금액은 페인트 30원/㎥

별첨 [3] 제 5부 (2) 운영관리비 내역  
2000.1.1 기준으로

〔二三九〕

총 무 t	FeO (%) wt/wt	평균 용광 온도(°C) m3/m3	기준 제작률 kg/㎥ (3%)		
			제작온도 m3/m3	kg/㎥	kg/㎥
FeO 9.5- 대수제리로 2000고온재 - 하스 3000은화로재 - 솔리드 3000 1.6G(국수선) 1.6G(솔리드)	1.35 3.400 4.800 360 220 12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6.65 3.650 7.840 12.000 18.250 -	76,650 3,650 7,840 12,000 18,250 -	210.00 10.00 21.48 32.88 50.00 -
2000 240	1.6713 240	10,000 10,000	m3/㎥ 23	m3/㎥ 8,300.00	kg/㎥ (3%) 0.0023
총 무 t	240	10,000	kg/㎥ (3%) 23	kg/㎥ (3%) 0.0023	kg/㎥ (3%) 2,407.000
총 도계					71,131,750

부록 3. 악동비 및 수수료 계약(20년평균)

속도	액조명 t/kw	법고용량 m3/분	사용량 t/분	법률		법률 (천)	
				<G>/t <sup>4</sup>	kg/t <sup>3</sup>		
FEC33- 하스프리온 화이트 그루지 -5~+5 온도제어기 - 온도기 제어장치 터보 터보 액식형 - 솔러 가선 스트	135 3,400 4,800 360 220 125 165  2,475 29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3.18 - 0.34 32.49 - 32.485 - 179.95  10,245 10,000	23.178 - 339 32.485 - - - 179.945  10,245 - -	63.50 - 0.93 89.00 - - - 493.00  63.52 - -	0.0064 0.0000 0.4001 0.0099 0.0000 - - 0.0493  63.52 - -	3,123.593 - 1,629.360 11,694,600 - - - 29,690,926  63.52 - -
총계						46,143.848	

卷之三

호수	인구밀도 명/km <sup>2</sup>	면적 km <sup>2</sup>	총인구 명	인구증감 명	인구증감률 (%)		인구비율 (%)
					증가	감소	
제주시	55.4	135	10,000	99,826	274	0.0274	13,476,713
제주시	55.4	3,400	10,000	3,650	10	0.0010	12,410,000
제주시	55.4	4,800	10,000	8,179	22	0.0022	39,261,360
제주시	55.4	360	10,000	44,485	122	0.0122	16,014,600
제주시	55.4	220	10,000	18,250	50	0.0050	4,015,000
제주시	55.4	125	10,000	179,955	0	0.0000	0
제주시	55.4	165	10,000	179,945,00	493,00	0.05	79,690,925
제주시	55.4	31,003	10,000	173,74	0	0.2121	10,217,713
제주시	55.4	290	10,000	8,300,00	23	0	0
제주시	55.4	1,000	10,000	0	0	0	2,407,000
제주시	55.4	1,000	10,000	0	0	0	117,275,598

卷之三

인수	약품명	기준 계량법			기준 비율 (%)
		단위 kg/단위	원료류당 kg/단위	시중류 kg/단위	
제11-1-하수처리용 슬라임 удал기 제11-2 고무지 제11-3 흙토	135 3,400 4,800 360 220 125 280 28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m3/m3 kg/m3	- - - - - - m3/m3 70,000	- - - - - - kg/m3 62	- - - - - - m3/m3 0.0009
제11-4-수처리 제11-5-전기부					만수계 222,525,000
					총도+만수 293,656,750

부록 3. 암울도 200m 해수면 (200m 해수면)

단위	단가 원/kg	용적 m <sup>3</sup> /t	용적 m <sup>3</sup> /t	부정률		부정률 (%)
				kg/m <sup>3</sup>	kg/m <sup>3</sup>	
FEC33- 하스카 123	135	70,000	-	-	-	-
필름 고무지 - 허수	3,400	70,000	-	-	-	-
필름 고무지 - 허수	4,800	70,000	3.17	3.172	8.69	0.0001
필름	360	70,000	-	-	-	-
마이크로 필름	220	70,000	-	-	-	-
생석회 - 흙 444	125	70,000	-	-	-	-
생수두	290	70,000	103.5	103.5	103.5	-
온수두	-	-	-	-	-	-
총 도입 단수	61,368,728					15,224,880
총 수령 단수	61,368,728					15,224,880

부록 3. 각 품비 및 산수도료 표(20년평균)

만수	물류량	단가 원/kg	별도유형 m <sup>3</sup> /㎥	별도 계약료		계 kg/㎥	계 kg/m <sup>3</sup>	계 (㎥)
				㎥/㎥	kg/m <sup>3</sup>			
제13-3. 수자원 관리부 제12. 물자 관리부 제10. 관공서 - 철도부 7. 털고 11. 청소년 8. 청소년	135 3,400 4,800 360 220 125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 - - 48.17 - -	- - 48.17/ 131.98 - - -	131.98 0.0019 - - - -	- - - 0.0019 - -	231,224.880	
장수노 영진군	290	70,000	m <sup>3</sup> /㎥ kg/m <sup>3</sup>	103.94 22.500	m <sup>3</sup> /㎥ 61.64	m <sup>3</sup> /㎥ 0.0009	0.525,000 237,749.880	만수계 송도+만수 355,025.478

**별첨 [3] 제 5부 (2) 운영관리비 내역**  
**2000.1.1 기준금액**

부록 2. 출자자 및 출자 (20년 평균)

항목	단위	기준금액	기초 계산수		
			기준 단위 kg	기준 단위 m <sup>3</sup> /년	기준 단위 kg/년 (?)
<b>총 도</b>					
수지부	단위 kg	기준 단위 kg/년 (?)	kg/단위 kg	kg/단위 kg	kg/단위 kg
수지부 양누기	26	10000	4,459,636	4459.64	12.22
수지부 소득	26	10000	-	-	12,218.18
현금증	50	10000	219,000	-	690.00
				0.50	0.06
					총 드비
					126,900.545
<b>총 도</b>					
수지부	단위 kg	기준 단위 kg/년 (?)	kg/단위 kg	kg/단위 kg	kg/단위 kg
수지부 양누기	26	10000	149,650	149.65	0.41
수지부 소득	26	10000	-	-	410.00
현금증	50	10000	-	-	0.04
					총 드비
					3,890,900

구단 4. 출판자 및 저작권 (2017년 2월)

총 노 무	국적 (나라) 별도로 기록	전기유전 기록 별도로 기록	별도로 기록			별도로 기록		
			전기 기록 별도로 기록	전기 기록 별도로 기록	전기 기록 별도로 기록			
총부도 예상수 7 총부도 소지 총부도	26 26 50	10000 10000 10000	4,609,286 - 219,000	4,609 - - 0.60	12.03 - - 600.00	12,628.18 - - 600.00	1.26 - - 0.06	119,841,445 - - 0.06 10,950,000
							총도서	130,791,445

中華書局影印

기록서류						
인수		발행증				
번호	단위 kg/kg	판구유량 m3/일	기록 kg/년 (연)	03/월(월)	도/월(?)	kg/㎡/hr3
수출시행일자	26	70000	23,628.947	23,628.95	64.74	64736.84
수령자수	26	70000	-	-	-	-
총금액	50	70000	1,533,000	-	4.20	4200.00
						인수처
						승인+발수
						817,903,177

기록서류						
인수		발행증				
번호	단위 kg/kg	판구유량 m3/일	기록 kg/년 (연)	03/월(월)	도/월(?)	kg/㎡/hr3
수출시행일자	26	70000	2,325.050	2,325.05	-6.37	-6370.00
수령자수	26	70000	-	-	-	-
총금액	50	70000	-	-	-	인수처
						승인+발수
						830,451,300
						승인+발수
						56,560,400

부록 7. 출판사 출판부 (20년 평균)

번호	단위	단위수	연간 수입 m3/년	발행량			판권 계약		
				기준 kg/평(2)	200kg(평)(kg)	kg/평(평)	kg/평(평)	kg/평(평)	년간 판 권(평)
출판사 출판부	26	70000	21,303,897	21,303,897	-	58.37	58,366.84	0.83	553,801,332
출판자 소작	26	70000	-	-	-	-	-	-	-
설립부	50	70000	1,533,000	-	-	4.20	4,200.00	0.06	76,650,000
								인수계	630,551,332
								총 인수	61,342,777

#### **별첨 4      (운영성능기준 및 절차)**

##### **제 1 부      송도시설**

- 1.1      측정 하수량
- 1.2      초소음기준
- 1.3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준
- 1.4      인도 철거

##### **제 2 부      관수시설**

- 1.1      측정 하수량
- 1.5      초소음기준
- 1.6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준
- 1.7      인도 철거



## 제 1부 송도시설

### 4.1.1 측정하수량

송도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량은 일평균 측정치는 표 4.1과 같다.

표 4.1 송도시설 - 측정하수량 (단위: 퐁/일)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하수량	5,3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하수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누	2023	2024							
하수원	10,000	10,000							

### 4.1.2 최소성능기준

송도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유입수가 표 4.2에서 정하는 유입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류수는 표 4.2에서 정하는 보통수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4.2 송도시설 - 최소성능기준

측정 항목	단위	유입 수질 <sup>(1)</sup>	유출 보통 수질	
			불과과 <sup>(2)</sup>	불공급 <sup>(3)</sup>
BOD <sub>5</sub>	mg/L	<58	<20	<10
COD (Mn)	mg/L	<106	<40	<20
SS	mg/L	<197	<20	<10
총질소	mg/L	<54	<20	<15
총인	mg/L	<5	<2	<2
노란-검은	개/ml	<3000	<3000	<3000

주(1): 샘플은 암과 A 출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특수수료제취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사업자 현자는 인천광역시의 임회 하수, 상습(30)은 0~정 여섯(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최소 이(2)회 채수를 재추한다. 0 채수를 충족하여 하나의 복합 샘플을 만들고 이를 A 출한다. 샘플 채취 간격이 정인(6)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 샘플을

별도로 시행하고,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산정한다. 전학성 여부는 원인 분석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수행되는 유인 수준 및 유출 수준의 100% 기준으로 결정한다.

- 주(2). 매월 대시간단 24개의 시류를 시간당 유량비례 자동 채수, 혼합하여 녹합 샘들을 만들고 시험하여 1일치를 구하고, 매월 그 결과의 평균치를 산정한다. 적합한 여부는 유의 물질형 및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유동 수질 및 유출 수준의 100% 기준으로 결정된다.
- 주(3). 표 4.2의 유입 수질은 일반적인 하수 흡입, 무하 헌농, 화학물질 및 생물질 혼유인 경우를 가정한 것임.
- 주(4). 협약당사자는 혼경부령 제 113호 해수도법시행규칙 2-정령에 따라 개장도는 방류수 수질 기준의 주요을 살피 첨의하여 시행한다.

시행자는 원별 시험 결과를 기록하여 월 관리로 인천광역시에 보고한다.

#### 4.1.3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준

승도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준은 시민생활자와 시공 도급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에 의한다.

#### 4.1.4 인도 절차 - 승도시설

##### 4.1.4.1 출작



다음은 승도시설의 인도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시설 인도에 관한 책임과 의무의 주요 원칙을 정하는 기준 절차이다. 이에 기초하여 시립시행자, 시공 도급계약자 및 운영관리 도급계약자에 의하여 승인된 보다 상세한 절차가 운영관리계약에 첨부된다.

이례로 서명하는 도 절자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      시운전 기간

제 2 단계      전기기계적 시험

제 3 단계      성능시험 기간

제 4 단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설 이전

##### 4.1.4.2 제 1 단계 - 시운전 기간

초기 단계에서, 토목구조물에 관한 시험은 구축 선을 구축 등에 수행된다.

이 시험은 주는 설계 및 기지 등의 흙질 및 수량에 관련된 것인다.

초기 기동전에 차관·장을 관찰하고 적절하게 시운전된다. 특히 공급자는 각 장비에 대하여 시운전 설치를 정하고, 헌터/시운 도급업체는 가능한 출자를 통합하고, 시운전 일정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운장치를 제공한다.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조경 및 외부 시설에 관하여, 운영자는 등해 그 관리실이 20년 이상 동성의 운영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시험을 행한다.

특히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풍자
- 강화 철근 로트
- 콘크리트레스 콘크리트
- 강철재 품
- 핵심단면
- 도장 기다 부식방지 수준  
증진률
- 시사율
- 척화처리자장
- 핵심 콘크리트의 고정
- 타이 박의 공급 및 설치
- 파일의 경구 작동
- 마이크로 파일
- 토언에 악혀있는 벽체 및 구조  
파일
- 사선세작 부설복
- 직업, 탱크 및 배관선의 방수식  
모든 출금 설치 작동 훈련
- 충격식 파일 및 연결
- 압력식 파일 및 연결
- 정수 시험 풀자
- 인천 장치 (핸드 드릴, 사다리, 통로, 절단도, 회전의사를 취급, 익사  
등)

장비에 대한 시험은 사업시행자의 감독 및 운용자 대표가 확보한 기준에 제정비로 시행된다. 시험 주간, 장비의 실제 사용능률, 그 능성, 제조일, 조립일, 표시, 고장 높이 기재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보통 운동장치 (보안, 차리 충제 푸프 등)  
넓은 거리
- 전기 무터의 전력 소모 기능 특성 (시동 선류, 전용, 효율성 등)
- 밸브의 규격
- 액체 저속 및 주급 시설의 규격
- 탈수 슬러지 물수성능과 물리적 수입량 및 작업 시간과의 관계
- 증기펌프장 및 전자로 시설에서 제거된 혼진물의 양 주도
- 신체적 시설의 효율성
- 모든 회전 기계의 진동
- 중수로서 산소 흐름 시험
- 소음, 소사 및 고작의 밀착성, 도장 및 마무리의 질 등 품질 등  
주제
- 소음 통제

운영자는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불안족스럽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관련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4.1.4.3 제 2 단계 - 전기기계적 시험

시험운전 중 시공자는 도그 전기기계적 장치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도동 보드에서 초만용량 혹은 0.1 풍 가능한 고여유량으로 시험 운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험 문경 준수는 그장 또는 주요 모작동이 발생하여 예방은 안되고,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시험운전 중 시공자는 일상적 유지관리, 부품 관리, 청소, 폐기물 처리, 압력을 점검 등을 날마다 한다.

전기 기계적 시험 운전 중에는 공정 수행을 행하지 아니한다. 시공자는 시험운전 속에 생활학적 자료 으소를 조정하고, 대체물적 성장을 감소 한다.

전기 기계적 시험운전의 최소 5일은 사업시행자가 허락하고, 이를 시공 도록 계약서에 기재한다 (최장 30 일).

즉정된 시험분야 기관이 윤료되고, 성돌학적 차리의 미생물 성장이 치티스을 공정 트증에 무한하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시험자기 민관하는 경우, 신기 기계적 시험운전을 풀류한다.

운영관리 도급계약자의 대표는 모든 시험분야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4.1.4.4 제 3 단계 - 성능시험 기간

성능시험 종 시금자는 저온 굽침 사재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도드에서 최대용량 혹은 이용 가능한 최대독량으로 시험 진전 할 수 있다.

0. 기간 중 누출원 또는 요소가 통제되어야 하고, 보호된 주차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실험 수압 및 오염 정도 (0·01크로 블루턴트 분석 등), 초기 조건, 물의 콘크, pH 및 rH 등 시험의 정확한 조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0. 기간 중 시험자는 물상적 유지, 부풀 끌기, 청소, 폐기물 처리, 화학약품 공급 등을 단행한다.

성능시험의 최초기준은 사업사행사가 설정하고, 이를 사용 도급계약서에 기재한다(통상 30일).

성능시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당해 시설은 시설 도급계약의 구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확정적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운영관리 계약자에게 운영관리 계약의 공식 발효를 통보한다.

이 때 인천광역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손도시설 관리를 항구를 실증한다.

#### 시험 절차의 목적

성능시험의 목적은 손도시설(본 첨 1 본 시설시설에는 제외함)의 성능과 각 작업 단소의 능력 및 규격에 부합함을 인천광역시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 시험 조건

보통 수량과 수질, 하수의 수질 및 처리와 관련하여 송도시설 성능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운영 요소,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은 시공 및/또는 시운전 단계에서 성능시험의  
근성이 된다.

요소 및 산출에 관한 실제의 상세한 시험 절차는 '시운전 절차'의 기준이 되며,  
이는 '작업 실무 조건 및 규칙'으로서 종식 공시드급자 약서에 기재된다.

모든 시험 절차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 및/또는 전문적 제조사/공급자의 권고로  
의거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시공 드급계약서 영수적으로 요구하는 투영  
안-뉴얼/설치서의 협조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일부 관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관해 고스 원수에 관한  
회복 시운전/보증 시험은 시운도시 또는 항복을 또는 측정 허가증에만 관련된다.

### **시험 절차**

설비, 요소, 시설, 장비 및 그 내부의 시스템을 시험하는 품자는 다음과 같은, 가능한  
한 결과물로 유효도며, 이들은 최신의 관행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다음의 시험 절차는 극명, 단계 또는 드로그램과 관계없이 송도시설의 공정요소의  
시운전 단계 수행된다.

#### 운전 텁프장 (차집관제)

해당 시험 내용

#### 차집관제

해당 시험 내용

#### 하수처리장

##### 처리 시설

물과 관련되는 모든 구조물, 선거, 배수 등에 대한  
정수화 시험  
육입기 적 유통 측정 노정  
유출사실 유증 측정 노정

제2 급점	기본스 저리 총괄 시설, 탐류 수심 조성, 슬러지 배출 시설 평가 수행(예로 스터이션에 대한 것과 같은) 등
통제 시스템	판도/전력 세어틴 시험 스탠다드 품질 및 밸런 기관, 경보 통제 및 TM 시설의 안전성 시험 유량부 보장

#### 4.1.4.5 제 4 단계 -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설 이전

총능시험은 항공적으로 원료되고 최소성능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하고, 인천광역시는 준공학인증증을 고부하며 두당사자 간 동안의 늦해 시설에 대한 권리보유권을 설정한다.

#### 4.1.4.6 의무와 책임

사업시행자, 시공자, 운영관리 계약자 및 인천광역시의 주요 권리, 의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표 4.3** 의무와 책임

기간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	시공자	운영관리 계약자
<b>총도시설</b>				
1 단계 시공전	승인 및 운수 인증서 발급; 관리운영권 설정	각 종비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승인 인증서 발급	각 시설 및 장비에 근한 시험의 계획, 준비 및 시행	시험 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 변경 관련 의견 제기 또는 제한 가능
2 단계 진단·기초시험	시험 참가 및 승인 인증서 발급	운전 준수 및 시설 환경 후 환경 인증서 발급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 주변 가동 및 유지; 공정 요소 설정	운전 참가
3 단계 성능시험	시험 참가 및 승인 인증서 발급	운전 준수 절차 시험 참가 및 주변부 승인 인증서 발급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 주변 가동 및 유지; 금정 성능시험 모의 및 시행; 운영은 계약자의 식권 고려	운전 참가; 직원 교육 확인; 시설 운영 및 성능에 관한 의견 제기 가능
4 단계 시설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운영권 설정	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		

## 제 2부 만수시설

### 4.2.1 추정하수량

만수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의 일평균 추정치는 표 4.4 과 같다.

표 4.4 만수시설 - 추정하수량

(년도, t/일)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하수량	34,02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하수량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연도	2023	2024							
하수량	70,000	70,000							

### 4.2.2 최소성능기준

만수 하수처리장에 허용하는 유입수가 표 4.5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부수는 표 4.5에서 정하는 보증수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4.5 만수시설 - 최소성능기준

측정 항목	단위	유입 수질 <sup>(1)</sup>	유출 부피 수질	
			을회내 <sup>(2)</sup>	합계근 <sup>(3)</sup>
BOD <sub>5</sub>	mg/L	<145	<10	<10
COD (Vn)	mg/L	<117	<40	<20
SS	mg/L	<121	<10	<10
총질소	mg/L	<28	<20	<15
총인	mg/L	<3	<2	<2
Na <sup>+</sup> 농도	개/㎖	<3000	<3000	<3000

주(1). 측정영역 내 시험은 흐름부 단계에서 따라 국수나료 자취방법<sup>(4)</sup>을하여 측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흐름속의 시의 입회 장애, 살집(30)분 이상 이식(6)시간이상의 간격으로 적어 3(2)회 샘플을 채취한다. 이 샘플을 충분히 혼화된 복합 샘플을 만들고 이를 시험한다. 생물 재배 간격이 6(2)시간을 초과한 경우 악생물을

별도로 시험하고,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산정한다. 적합성 여부는 우리 생활생 5  
시학 단계에 따라 수행되는 유입 수질 및 유출 수질의 100% 기준으로 결정한다.

- 수(2) 매일 대시간 등 24개의 시료를 시간당 유량비로 자동 캐취, 혼합하여 복합 샘플을  
만들고 시험하여 1 일치를 구하고, 매일 그 결과의 평균치를 산정한다. 적합성  
여부는 우리의 샘플링 및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유입 수질 및 유출 수질의 100%  
기준으로 결정한다.
- 수(3) 표 4.5의 유입수질은 일반적인 하수 성상, 브하 건물, 학교들진 및 가물질 험유율  
경우를 가정한 것임.
- 주(4) 환약감사자는 환경부령 제 113 호 하수도관시험규칙 개정령에 따라 개정되는  
방법수수질 기준의 적용을 통일하여 시행한다.
- 주 5) 방류수수질 기준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 6 조 1 항 관령(2003.6.17 개정) 별지 1 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일별 시험 결과를 그 결과이 높 인위로 인천광역시에 보고한다.

#### 4.2.3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준

단수시설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시험 기준은 사업시행자와 A급 도교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에 의한다.

#### 4.2.4 인도 절차 - 단수시설

##### 4.2.4.1 통착

본 별첨 제 1호에 명시된 솔루션의 인도와 관련된 당시 시설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수지기 단수시설에 준용된다.

단, 성능시험 단계에서 중계편집장 및 차장관이의 사용 절차는 17점과 같다.

##### 증계점수기준 (자습관련)

###### 필드 성능시험

실제 풍프 풍성 시험, 전력수비, 수두 등 포함

스탠바이 풍프, 우회 길이 시험

유동계: 보수 시험

###### 세아 시스템

펌프/밸브 제어판 시험

스탠바이 풍프 및 밸브

인급, 경보 등 제 1~IV 시설의 관리상 소홀

### 차질관리

회수도 및 상승 본관

정수와 및 악화 시험, 장치 시험

상승계 고정

#### 4.2.4.2 의무 및 책임

사업주 총자, 소급자, 운영관리 계약자 등 인천광역시의 주요 관리, 의무 및 책임은 다음 표에서 요약하는 바와 같다.

표 4.6 의무와 책임

기간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	서급자	운영관리 계약자
만수시설	승인 및 관료 인증서 한글: 권리·분영권 영문: 증명	작장비 등 시설 부분이 대체로 증인 인증서 발급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을 계획, 준비 및 시행	시험 참가; 사업주 환경에 대한 시설 변경 관련 의존 사실 또는 제한 기능
2 단계 인증 시험	시험 참가 및 승인 인증서 발급	운전 준수 및 시험 환경 후(원료) 인증서 발급	자신의 비율으로 시험 진열 가동 및 유지; 충전 모드 설정	운전 참가;
3 단계 성능시험	시험 참가 및 승인 인증서 발급	운전 준수, 성능 테스트 참가 및 조건부 승인 인증서 발급	자신의 비율으로 시설 전면 가동 및 유지; 공정 성능시험의 계획 및 시행; 운영관리 계약서의 조문 교육	운전 참가; 적운 고용 확인; 시설 운영 및 성능에 관한 의견개진
4 단계 시설 이전	사업주 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	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		

## 별첨 5 (해지시 자금금 산정)

아래에 고증된 박빙은 본 협약의 농노해지사, 민취광역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시 자금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참스널(1), 건설기간 속의 해지시 자금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 1 부에 정의된 적정가치(FV) 계산식들, 무설비용 기간 종료 해지시 시금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 2 부에 정의된 디렉션无助權을 오 차운재가치(PV) 계산식을 참조한다.

### 제 1 부 적정가치의 정의 및 계산

#### 5.1.1 정의

적정가치는 본 사업의 건설기간 속의 본 협약 종료 해지시 현관기관이 산정한 본 사업사실의 적절한 가치를 말한다. 아래의 계산식은 건설기간 종료 본 협약이 해지를 경우의 해지시 시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 5.1.2 계산

$$A_t = \{B_t \times (1 - i_1) \times (1 + i_2) \times (1 + i_3) \cdots \times (1 + i_n)\} \quad (t = 1, 2, \dots, n)$$
$$C_t = A_t \times (1 + r)^{t+1} - A_t$$
$$FV = \sum_{t=1}^n (d_t + C_t)$$

여기서,

$A_t$  = 종도축 시시설의 회파기자로 소식된  $t$ 년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사업부

$B_t$  = 2000.1.1 시점의 유통가치로 표시된  $t$ 년에 사업시행사가 부담한 사업부

$C_t$  =  $t$ 년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사업비에 관하여 1년부터 종도해지시 전까지 적용된 투자수익

$FV$  = 조준가치

$i$  = 2000.1.1 부터 종도축 시설까지 발생한 각 기도를 실현성 평가로 총률

$n$  = 2000.1.1 부터 농노해지시 첨지지로 연도수

$r$  = 실시 행정부의 사업수익률

## 제 2 부 미래현금흐름 순현재가치의 정의 및 계산

### 5.2.1 정의

그 과현금흐름 순현재가치는 본 사업의 무상사용기간 중의 년 협약 종료 해지시 간접기관이 산정한 본 사업시설의 적정한 가치를 말한다. 아래의 계산식은 무상사용기간 줄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지시 자금흐름을 산정하고 위에서 참조된다.

### 5.2.2 계산

$$A_t = \{B_t \times (1+i_1) \times (1+i_2) \times (1+i_3) \cdots \times (1+i_e)\}$$

$$PV = \sum_{t=1}^e \{A_t \div (1+r)^t\}$$

여기서,

$A_t$  = 종도해지 시점의 환폐가치로 조정된 t년의 순현금흐름액

$B_t$  = 2000.1.1 시점으로 환폐가치로 표시된 t년의 순현금흐름액

$PV$  = 순자 가치

$i$  = 2000.1.1 부터 종도해지 시설까지 발생한 고정도별 수익률

$n$  = 2000.1.1 부터 종도해지 시설까지의 연도수

$e$  = 종도해지 시설부터 무상사용기기 출고일까지의 연도수

$r$  = 실제 협약상의 사업 수익률

제 6 (총리 확인 필요)

한국인권법

2020-05-25

대표자 성별 : ♂ (91)

卷之三

五三

구 사가 시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시설 관리 및 보수 시설 확충에 대한 관리자료는 22주 제1항 및 통권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총공 ~~화은~~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명 (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 장소:
  4. 공사 목적:
  5. 공사 기간 (준공년월일):
  6. 주관 시설 (국가·국·시·군·구):

200 5 5 5

λ̄(x̄) = 0

## 별첨 7 (위약금)

두상사용기간 중에 사용사항자는, 별첨 4(운영성능기준 및 설자)에서 정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할 위반을 피하는 경우, 본 출약 제 35 조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7.1 위약금

#### 7.1.1 위약금 산정

별첨 4에서 정하는 최소성능기준 방류수질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아래 7.2 절을 조건으로, 수질환경부전법과 동시에 빛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적 기준에 따른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LD = \sum \{ LD_{iq} \times Vf_{iq} \times PC_{iq} \times PC_{ir} \times PC_{ic} \times PC_{it} \}$$

여기서,

*LD<sub>iq</sub> : 수질환경보전법 별첨 제 3에 따른 표 7.1에서 참조되는 각 수질요소에 관한 험증기준치*

*Vf<sub>iq</sub> : 수질환경보전법 제 6-1 항에 대해서 산출하는 공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관리 수질 수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처간 하수량*

*PC<sub>iq</sub> : 수질별 위반금 계수 - 각 값은 표 7.2 출소*

*PC<sub>ir</sub> : 지역별 위반금 계수 - 환경부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관한 값은 1.0*

*PC<sub>ic</sub> : 처리장별 위반금 계수 - 수질환경보전법 별첨 6-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위 시설에 대한 값은 1.8*

*PC<sub>it</sub> : 위반건별 위반금 계수 - 수질환경보전법 별첨 6-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경우 1.8, 제 2회부터는 매 회마다 급격히 1.5*

### 발성치(EDe)

표 7-1 발성치 (단위: $\text{mg}/\text{kg}$ )	
항목	값
BOD <sub>5</sub>	250
SS	250
COD (M <sub>r</sub> )	250
총질소	500
총인	500

### 위반 하수량(Vfa)

$$Vfa = Vm \times Pf \times Qos \times 10^{-6}$$

Vm: 평균 처리량 ( $\text{t}/\text{min}$ )

Pf: 평균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는 하수기 발류된 기간 (min)

Qos: 평균수 기준 수질 초과농도:  $\{\text{허용농도} - \{\text{기준수질농도}\}\} (\text{mg/l})$

\* 기호: 위반 샘플링 및 위반기간(Pf)

(1) 어느 30 일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가 별첨 4-6 표를 복수사료채취방법으로 스텐화 첫번째 샘플링에 의하여 사용시행자가 별첨 4에 기재한 일최대 유출수율을 무관한 정도로 특수한 경우(이하 이리한 위반율 최초위반(SR0)라고 한다), 위반기간(P<sub>f</sub>)은 9 시간(540 분)으로 한다. 최초위반(RF)은 위 30 일의 기간 중 1 회에 한한다.

(2) 위 30 일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는 1)의 조건에 따라 원하고 때에 추가적으로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샘플링 시간과 샘플의 수는 서울시립보건의 학회로 정한 1. 주기적 샘플링이 있는 날의 샘플링간의 시간 간격은 1 시간(60 분) 이상 3 시간(180 분) 미하므로 한다. 이러한 추가 샘플을 걸고 어느 추가 샘플이 별첨 4-6 기재된 일최대 유출수율을 무관한 경우, 위반기간(P<sub>f</sub>)은 실제 위반된 샘플간의 시간 간격으로 계산하며, 1 을 그 배수한 샘플들이 모두 별첨 4에 기재된 일최대 유출수율을 초과한 경우 위반기간(P<sub>f</sub>)은 24 시간(1,440 분)으로 한다.

- (3) 사업자 행자가 별첨 4-6-2 내린 물질류 유통수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반 기간(?)는 24시간(1,440분)으로 한다.
- (4) 환경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수질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사업자용지가  
법정수질을 우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에 대한 보증수율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농 수질조사시의 살포형 형태에 따라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적용한다. 단, 사업자 행자는 환경부 또는 유관기관의 수습소사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의 일호를 오직할 수 있다.

### 수질별 범칙금 계수

표 7-2 수질별 범칙금 계수

	계수								
	20% 기준	20% ~ 40% 기준	40% ~ 60% 기준	60% ~ 100% 기준	100% ~ 140% 기준	140% ~ 180% 기준	180% ~ 220% 기준	220% ~ 260% 기준	260% ~ 300% 기준
BOD <sub>5</sub>	3.0	4.0	4.5	5.0	5.5	6.0	6.5	7.0	
SS	3.0	4.0	4.5	5.0	5.5	6.0	6.5	7.0	
COD (Mn)	3.0	4.0	4.5	5.0	5.5	6.0	6.5	7.0	
총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총인	3.0	4.0	4.5	5.0	5.5	6.0	6.5	7.0	

주: 방류수 속도 기준 초과율% = [(폐수농도] - [기준수질농도]) ÷ [기준수질농도] × 100

### 7.1.2 악취 위약금

별첨 4(문전승능기준 및 절차)에서 정하는 악취 최소송능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은 7.1.1-2 총한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 7.2 위약금 총액의 한계

두상사를 기준으로 이는 사업장도, 농원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액은 다음과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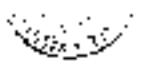
이느 사업년도 매출액 대하여 날짜 연도 연간 운행비의 2.0% 및  
장해 견드에 대하여 등해 연드 연간 운행 비의 7.5%.

C.만, 위 뒤의 글의 총액에는 법정수집 규칙으로 인한 현장발로노인 범위를 증가 포함된다.

### 7.3 책임의 한계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우약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 고사법시설의 처리 하수량이 주정하수량의 33.3% 이상인 경우;
- (b) 병원 4~5세 상승하는 합격된 수질 기준을 벗어나서 처리가능 하수 수질이 극 đo정한 경우;
- (c) 인천광역시가 (i) 통상적 운영 관행에 따라 하수관거를 운영 및 유지하지 못하거나 (ii) 사업자에게 하여금 본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의 일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d) 평가항목;
- (e) 본 사업자에서 우등크레딧(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f) 설치의 용설적 절차 또는 유사 물/ 또는 대수선을 위하여 본 사업시설의 용설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 (g) 혼약당사자가 법 조례 규정의 변경에 부합하기 위한 것하거나 본 사업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운조달과 설계 또는 초기 공사의 진행이 학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인천광역  
지사  
인장

## 별첨 8        {기준사용료}

기준사용료는 2003년 1월 1일 물가변화율로 본 협약 42조 및 44조에 따른 운영개시 금액에 적용될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래 명시된 사용료 A 및 사용료 B이다.

### 1) 윤상사용기간 최초 12개월간

사용료 A : 달력 3개월 중 본 사업시설의 처리 하수량과 무관하게 월별 평균 사용료는  
    **최종금액 508,383,333 원 (6,100,000,000 원/1500 청정) ; 더하기**

사용료 B : 본사업시설의 월별 처리 하수량 0~629 펌/톤을 초과한 금액

### 2) 무상사용기간 13개월째 이후 2011년 6월까지

사용료 B : 본 사업시설의 월별 처리하수량 0~629 펌/톤을 초과한 금액

### 3) 2011년 7월 이후 단료시까지

사용료 B : 본 사업시설의 월별 처리하수량 0~629 펌/톤을 초과한 금액

우선 서명하는 기준사용료는 복가가지세를 제외한 가격이다.

기준사용료는 결회 9(사용료 조정) 및 그 협약 제 42조, 44조에 의한 사용료 조정과  
    따라며 2000년 1월 1일 기준을부터 적용된다.

## 별첨 9 (사용료 조절)

A-종은 원천총액과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 1) 유통사용기간 초초 사업년도

기부금액 A(A)와 사용료 B(B)는 기초사용료에 2000 원을 초과한 부터의 소비자들의 가상승률 및 전역 및 슬리지처리 단가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이 후 각 사업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료가 조정된다.

### 2) 유통사용기간 2년차 이후 안정연세기

$$T_0 = A_0 + B_0$$

여기서:  $T_0 = (o)$ 년도 사용료

$A_0 = (o)$ 년도 사용료 A

$B_0 = (o)$ 년도 사용료 B

(주: 위 수식에서  $A_0/B_0$ 는 구속사용기?: 1년차에는  $A_0/B_0$ 로 대체되어 활용된다. 또한 위 수식에서는 사용료 A는 유통사용기간 최초 12개월 동안만 해당된다.)

$$T_n = [A_0 \times (1 + Cp'(o))] + [B_0 \times K(v)]$$

여기서:  $T_n = (n)$ 년도 사용료

$Cp'(o) = (o)$ 년도 소비자들의 가상승률

$(n) = 사용료 조정 양해 정도$

$(o) = (e)$ 의 진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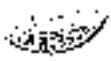
$$\text{그림 9: } K(v) = \frac{R \times (1 - Cpi_{(n)})}{P \times (1 + Cpi_{(n)}) + (K_p) \text{ 대체기}} \\ S \times (1 + Cpi_{(n)}) + (K_s)$$

R = 0.0554 A-종료 A 중 진관도 B 중 (20년간 진관도 + 20년간 사용료 B 수입 = 19,883 백만원 + 358,636 백만원)

S = 0.0367 사용료 B 중 슬리지 처리비 비중(20년간 슬리지 처리비 + 20년간 사용료 B 수입 = 13,162 백만원 + 358,636 백만원)

$$R = 0.9070 \text{ 사용료 } R \text{ 중 전력비/설비자본비비율 제외한 } \\ E' \text{ 은 } E(1-(P+S))$$

(※: 위 스스로에서  $K_p$  와  $K_s$  는 총액과 승려지지리 관가의 연동률  
시급시행자/인천광역시승가 부수하기 우한 운송료로 승급(•/) 조정으로서,  
수고시율>도농률을 고증으로 한 조정에 추가되는 것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별첨 10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 보고서)

(광역)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 보고서	
(1) 사업명	
(2) 공사의 종류	
(3) 사업시행주체	
(4) 사업시행구도	
(5) 사업 목적	
(6) 출공시간	
(7) 금시기 간	
(8) 국가구속 사업 내용	
(9)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른 민간 투자자(민관 합동 및 공동 사업자)에 대한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 확인을 받고자 군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억 원

신청인: 범인용  
내선자 성명 : (2)  
법인등기번호:  
법인 주소 :

인천광역시 강구군

그림자류

1. 준금도서 (준금술과 노서 및 소설시전 포함)
2. 시절 군수 또는 구총장이 발행하는 각종 축령장과도
3. 준금 선주의 노서 및 시설 등의 도록
4. 준금 선주의 노서 및 시설대비표
5. 이다. 준금총인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별첨 11 (보험)

사업자 등재는 2001년 1월 22일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재의 의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은 구독기준 등록 기관에서 인천광역시로 협의된다.

표 11.1　　승차기간 중 가입 보험

항목	내 역
보험일	1. 건설근사보험 2. 예정이익보험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4. 해상작업보험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손해 - 자연재해 또는 외래적 사고 손해 - 기술적 원인에 의한 사고 손해 - 제3자 손상보험 포함
부보명우	2. 예정이익보험 - 공사 사고로 자연되는 일정 기간의 예상수입 손실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공사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근무자의 소지 손해 4. 해상작업보험
보험기간	승차기간

표 11.2　　로간 사용기간 중 가입 보험

항목	내 역
보험경	파기지 보험
보험내용	1. 새글손상 - 완성된 노동공시물의 손해 2. 기계 - 기계, 기계물과 및 상자의 불식 손가 3. 기밀로사 물 이익상속 - 소설물의 경승적인 분양이 물가 하락 발생한 수익 손실 4. 배송책임 - 소설 분양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
보험기간	도장 사용기간

## 별첨 12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본 별첨은 사업자 행자와 재정적 주권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로서 별첨 8의 기준사용도를  
설정해 준 기초자료이다.

제 1부	대차대조표
제 2부	손익계산서
제 3부	현금흐름표
제 4부	불변 현금흐름표

본 재무제표는 전부된 자료로 CD-Rom 의 내용과 같다.



한국은행  
재무제표

별첨12 제1부

대차대조표

연간 대차대조표	연체율 및 평균 일자수(일) 추세(화물·부록별)																							
	2002-12-31	2003-12-31	2004-12-31	2005-12-31	2006-12-31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3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운송수	345,432	37,027	1,216	2,645	8,945	18,875	16,925	19,485	21,351	23,528	25,351	1,292	10,446	8,958	1,299	1,274	1,260	1,266	5,682	13,492	22,212	31,209	41,719	53,597
영업	228,551	117	385	961	4,727	8,408	8,745	9,795	11,460	13,512	13,374	-	-	-	-	-	-	3,522	11,290	15,548	25,591	35,262	50,549	
부자산화물운송수	64,526	-	-	-	1,795	3,281	5,400	7,215	7,215	7,218	7,218	7,216	1,820	-	-	-	-	-	-	-	-	-	-	
기수화물	64,526	-	-	-	1,795	3,281	5,400	7,215	7,215	7,218	7,218	7,216	1,820	-	-	-	-	-	-	-	-	-	-	
수고화물	14,076	-	-	-	1,024	1,307	1,400	1,466	1,584	1,814	1,780	-	-	-	-	-	-	-	-	-	-	-	-	
화상화물	33,534	-	-	-	714	982	1,125	1,131	1,205	1,352	1,450	1,539	1,620	1,700	1,774	1,860	1,966	2,054	2,158	2,264	2,377	2,498	2,621	
기타화물	3,072	7,190	1,621	521	-	-	-	-	-	-	-	-	-	-	-	-	-	-	-	-	-	-	-	
전국화물(현장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철도(미수출(포스팅))	1,617,517	28,131	73,027	108,144	120,892	126,900	126,291	130,074	95,825	94,219	84,348	80,411	80,26	76,054	71,620	80,126	62,276	57,325	61,575	45,897	39,241	31,601	21,519	11,107
화물차수	503,428	23,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화물운송 차수	212,129	24,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운행설비	1,459	-	-	-	1,983	1,448	1,983	1,983	-	-	-	-	-	-	-	-	-	-	-	-	-	-	-	-
운행기관·운송회사수	305,611	-	-	-	1,524	2,575	5,187	7,696	8,523	11,570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화물수	1,617,517	28,131	73,027	108,144	120,892	126,900	126,291	130,074	95,825	94,219	84,348	80,411	80,26	76,054	71,620	80,126	62,276	57,325	61,575	45,897	39,241	31,601	21,519	11,107
화물수	212,129	24,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화물수	1,459	-	-	-	1,983	1,448	1,983	1,983	-	-	-	-	-	-	-	-	-	-	-	-	-	-	-	-
화물수	1,617,517	28,131	73,027	108,144	120,892	126,900	126,291	130,074	95,825	94,219	84,348	80,411	80,26	76,054	71,620	80,126	62,276	57,325	61,575	45,897	39,241	31,601	21,519	11,107
화물수	212,129	24,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화물수	1,459	-	-	-	1,983	1,448	1,983	1,983	-	-	-	-	-	-	-	-	-	-	-	-	-	-	-	-
화물수	1,617,517	28,131	73,027	108,144	120,892	126,900	126,291	130,074	95,825	94,219	84,348	80,411	80,26	76,054	71,620	80,126	62,276	57,325	61,575	45,897	39,241	31,601	21,519	11,107
화물수	212,129	24,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화물수	1,459	-	-	-	1,983	1,448	1,983	1,983	-	-	-	-	-	-	-	-	-	-	-	-	-	-	-	-
화물수	1,617,517	28,131	73,027	108,144	120,892	126,900	126,291	130,074	95,825	94,219	84,348	80,411	80,26	76,054	71,620	80,126	62,276	57,325	61,575	45,897	39,241	31,601	21,519	11,107
화물수	212,129	24,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15,224	18,075	14,438	15,016	21,754	22,156	22,546	23,142	22,842	22,322	21,108	8,772	11,297
화물수	1,459	-	-	-	1,983	1,448	1,983	1,983	-	-	-	-	-	-	-	-	-	-	-	-	-	-	-	-
화물수	1,617,517	28,131	73,027	108,144	120,892	126,900	126,291	130,074	95,825	94,219	84,348	80,411	80,26	76,054	71,620	80,126	62,276	57,325	61,575	45,897	39,241	31,601	21,519	11,107
화물수	212,129	24,725	35,446	104,140	13,507	5,003	8,605	6,132	2,626	11,529	13,442													

별첨12 제2부

손익계산서

100

2019년도 인천 송도만수 학수 치관 질 프로젝트

사용료산정을 위한 불변현금 흐름표

**별첨 13**      **(총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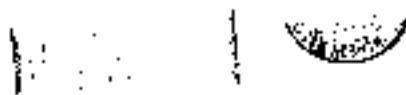
**제 1 부**      **충주시 총령면도 및 운암길계**

**도면 13.1** **충주하수처리장**

**제 2 부**      **안성시 총령면도 및 운암길계**

**도면 13.2** **안성하수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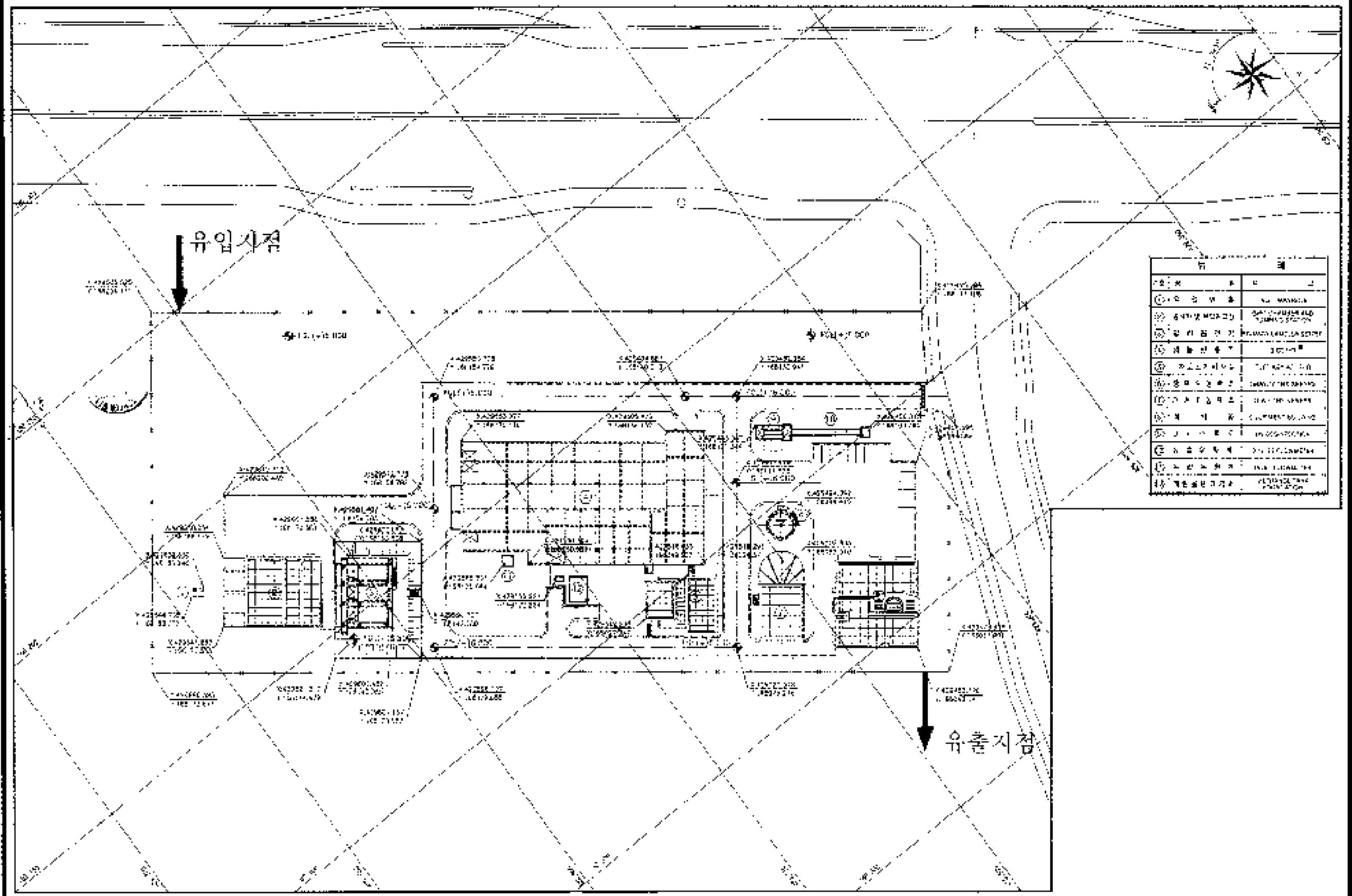
**도면 13.3** **안성처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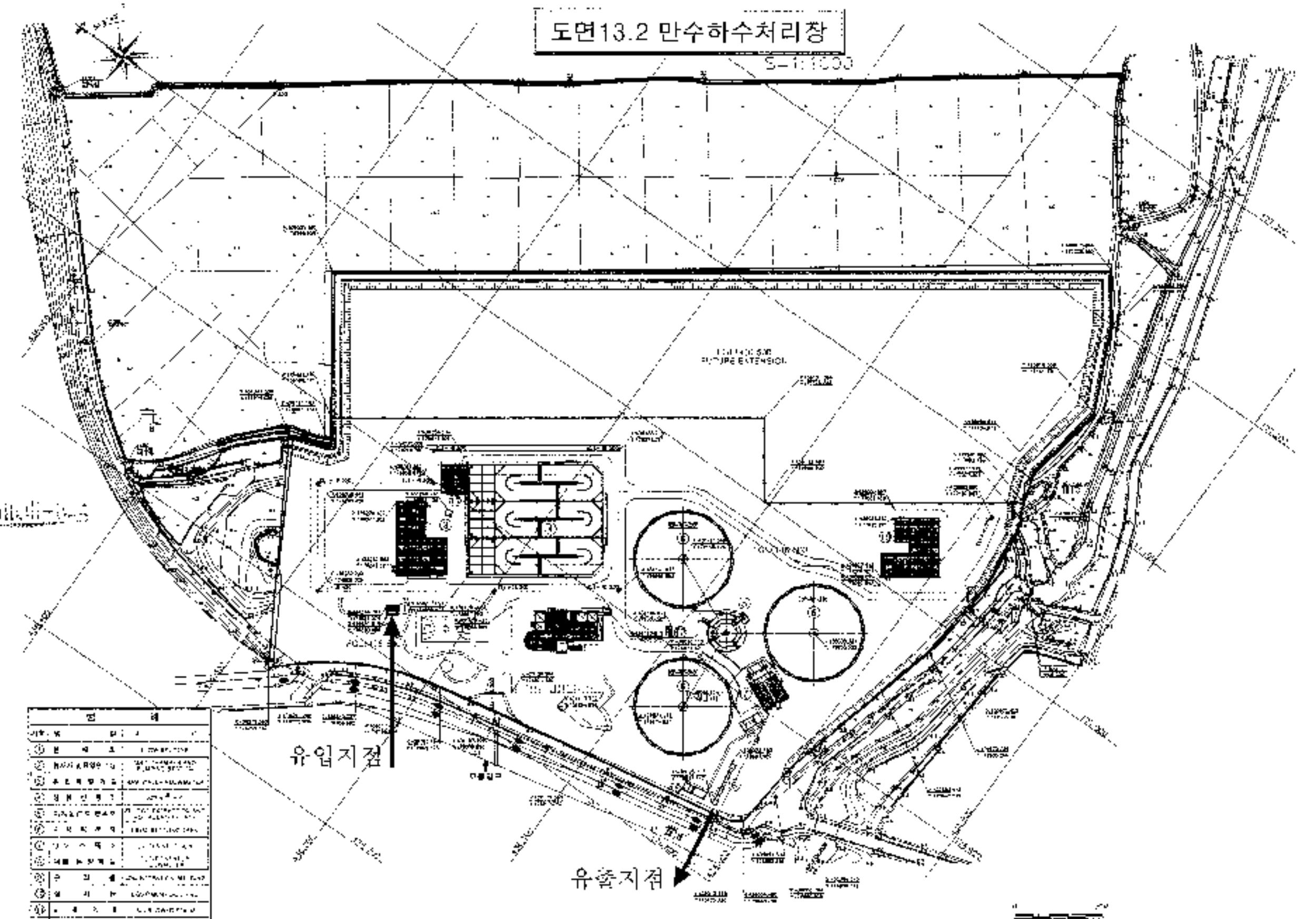
### 도면 13.1 송도 히수 처리술

S=1 /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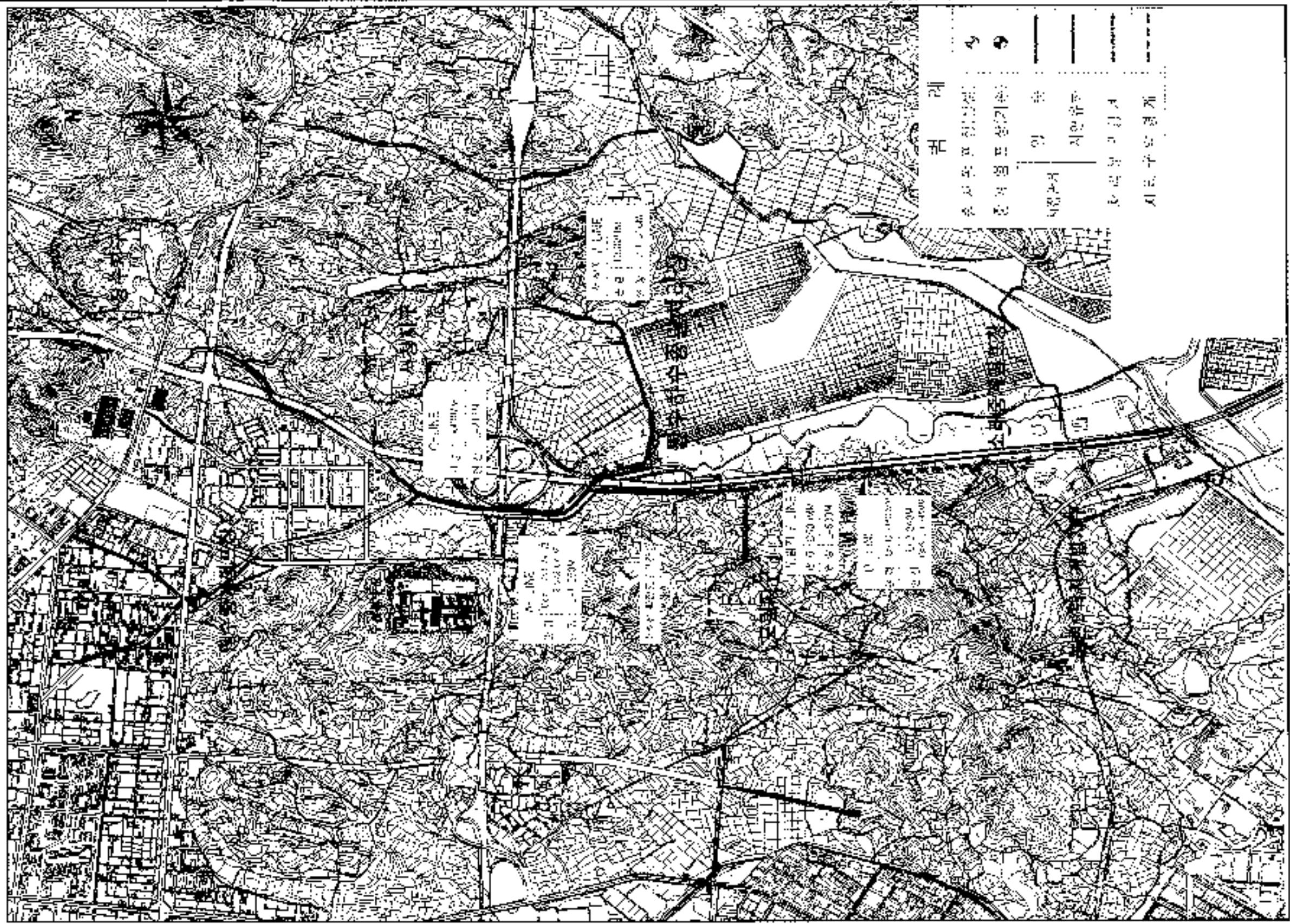
### 도면13.2 만수하수처리장

S-11100



## 도면 13.3 만수차리구역

S=1:25,000



### 별첨 14 [기본적 재지출액]을 계산하는 계획서

Scalable Yarns for Sewage Treatment Facilities Proc. IBC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합니다.